

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3월20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32. 업무보고(계속)
 - 가. 고용노동부

상정된 안건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3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종희·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3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종명·문진국·권석창·김용태·김현아·엄용수·박명재·여상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3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3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김정우·김철민·남인순·민홍철·백재현·신창현·유승희·정성호 의원 발의) 3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신상진·함진규·김종태·정태옥·추경호·최교일·이현승·윤영석·유재중·김성찬·윤한홍·이주영·강석진·정우택·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3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4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정우·박정·박찬대·송옥주·신창현·원혜영·유동수·윤관석·정성호·정춘숙 의원 발의) 4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정우·윤종오·손혜원·박주민·어기구·윤소하·김삼화·채이배·박홍근·박경미·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4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동철·장정숙·박선숙·김관영·최도자·황주홍·정인화·윤영일·오세정·조배숙·채이배·김광수·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4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김명연·장석춘·강석호·홍문중·지상욱·김승희·윤종필·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4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정성호·박주민·이용주·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4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천정배·홍문중·문진국·곽상도·함진규·장석춘·하태경·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4
1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서형수·이정미·이석현·신창현·임이자·우원식·한정애·문진국·김현권·장석춘·박홍근·도종환·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상정·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인재근·박남춘·윤소하·박정·홍철호 의원 발의)

(계속) 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정미·김경협·서형수·진선미·송옥주·박남춘·이용득·신창현·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계속)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중희·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4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백혜련·박남춘·박용진·윤후덕·서형수·김상희·김해영·김종민·윤소하·최도자·김성수·윤종오·위성곤·이철희·고용진·안규백·김관영·서영교·황주홍·박주민·김영춘·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4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진표·이찬열·백혜련·김영진·장정숙·이용득·진선미·문미옥·강병원·서형수·최도자·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3)(계속)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문진국·홍문중·강석호·김명연·金成泰·김한표·이양수·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5)(계속)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정인화·김중희·유성엽·정동영·권은희·황주홍·최도자·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문진국·이양수·송희경·강석호·곽대훈·홍문중·지상욱·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2)(계속) 4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송옥주·정재호·백재현·진선미·윤관석·손혜원·김상희·장정숙·이용득·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87)(계속) 5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병욱·남인순·박정·신창현·윤관석·윤종오·이용득·이원욱·원혜영·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5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1.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8

32. 업무보고(계속) 8

가. 고용노동부

(09시35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중희·주승용·황주홍·

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종명·문진국·권석창·김용태·김현아·엄용수·박명재·여상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김정우·김철민·남인순·민홍철·백재현·신창현·유승희·정성호 의원 발의)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신상진 · 함진규 · 김종대 · 정태욱 · 추경호 · 최교일 · 이현승 · 윤영석 · 유재중 · 김성찬 · 윤한홍 · 이주영 · 강석진 · 정우택 · 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조정식 · 윤관석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정우 · 박정 · 박찬대 · 송옥주 · 신창현 · 원혜영 · 유동수 · 윤관석 · 정성호 · 정춘숙 의원 발의)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서영교 · 김정우 · 윤종오 · 손혜원 · 박주민 · 어기구 · 윤소하 · 김삼화 · 채이배 · 박홍근 · 박경미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동철 · 장정숙 · 박선숙 · 김관영 · 최도자 · 황주홍 · 정인화 · 윤영일 · 오세정 · 조배숙 · 채이배 · 김광수 · 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문진국 · 김명연 · 장석춘 · 강석호 · 홍문종 · 지상욱 · 김승희 · 윤종필 · 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심상정 · 노회찬 · 추혜선 · 윤소하 · 김종대 · 정성호 · 박주민 · 이용주 · 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金成泰 · 천정배 · 홍문종 · 문진국 · 광상도 · 함진규 · 장석춘 · 하태경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1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서형수 · 이정미 · 이석현 · 신창현 · 임이자 · 우원식 · 한정애 · 문진국 · 김현권 · 장석춘 · 박홍근 · 도종환 · 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노웅래 · 안규백 · 김경협 · 심상정 · 심재권 · 김민기 · 김병욱 · 정세균 · 인재근 · 박남춘 · 윤소하 · 박정 · 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정미 · 김경협 · 서형수 · 진선미 · 송옥주 · 박남춘 · 이용득 · 신창현 · 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계속)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경진 · 박주선 · 이동섭 · 최경환(국) · 김종희 · 주승용 · 황주홍 · 김동철 · 김관영 · 이용주 · 유성엽 · 박지원 · 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백혜련 · 박남춘 · 박용진 · 윤후덕 · 서형수 · 김상희 · 김해영 · 김종민 · 윤소하 · 최도자 · 김성수 · 윤종오 · 위성곤 · 이철희 · 고용진 · 안규백 · 김관영 · 서영교 · 황주홍 · 박주민 · 김영춘 · 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김진표 · 이찬열 · 백혜련 · 김영진 · 장정숙 · 이용득 · 진선미 · 문미옥 · 강병원 · 서형수 · 최도자 · 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3)(계속)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홍문종 · 강석호 · 김명연 · 金成泰 · 김한표 · 이양수 · 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5)(계속)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이동섭 · 정인화 · 김종희 · 유성엽 · 정동영 · 권은희 · 황주홍 · 최도자 · 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이양수 · 송희경 · 강석호 · 광대훈 · 홍문종 · 지상욱 · 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2)(계속)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송옥주·정재호·백재현·진선미·윤관석·손혜원·김상희·장정숙·이용득·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87)(계속)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병욱·남인순·박정·신창현·윤관석·윤종오·이용득·이원욱·원혜영·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이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5일과 16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6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장석춘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징수업주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에 관한 심사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바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주로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둘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를 입은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결혼중개업을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결혼중개업을 추가하고 식품접객업 중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장병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광수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의 산정 방식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명시하고 최저보상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전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브로커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산재기금 회계처리 방식을 국가회계법에 따른 회계처리로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기관별 출연금 기준을 징수업무량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등 보험재정 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 3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급여에

한해 5년으로 연장하여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이자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홍영표·김삼화·장석춘·박광온·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완영·홍영표·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10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가 본회의 부의 이전에 회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근로해 오던 노동자가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여 보장성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업무전환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토록 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급여의 최저보상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고용보험료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6개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산재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고 고객응대노동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09시51분)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감사요구사항 중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한 감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포털 구축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와 유착의혹 등에 대한 감사 등 3건의 감사요구안을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업무보고(계속)

가. 고용노동부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에도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법률안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 간의 합의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4월 초에 노사 양쪽의 의견을 다시 듣는 시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최심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우리 국회가 노·사·정·국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사 간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업무보고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오늘 2018년 첫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입니다. 간사 간의 합의하에 3월 초에 이미 업무보고 일정이 오늘로 잡혔는데 사실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는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서야 저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 추진계획은 올 한 해 고용노동부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원실에서 이틀 전에는 받아 보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질의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초안이 이틀 정도 전에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최종본에 대해서 요구했더니 어젯밤까지도 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 인쇄본으로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주의를 주시고 늦어도 이틀 전에는 이런 업무보고 자료들이 위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업무보고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나 보완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에서 2018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 혁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왔다면 이제는 고용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이 ‘노동 존중사회’와 ‘사람중심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노동현장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일하는 문화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공휴일 민간 적용, 5개 특례업종,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초기의 우려와 달리 곳곳에서 상생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일자리안정자금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노동자 132만 명, 42만 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해 주셔서 목표 대비 신청률이 55%를 넘어섰습니다.

내년 이후 안정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연구도 꼼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TF 권고안을 정부에 이송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많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하청노동자의 피해가 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대책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직장 내 성희롱, 갑질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 감독, 처벌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도 하나씩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규직 채용원칙을 확립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전문가, 노사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노사관계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월 31일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만간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3~4년간 큰 일자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년들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뛰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일자리대책에 최대한 반영한 만큼 앞으로 정책홍보 과정에도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정부사업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최근 군산, 통영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일자리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직·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지역과 긴밀히 협업하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와 같은 공공훈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진국 사례를 보기 위해 지난주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연방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직업훈련 전략을 논의하였고 폴리텍·독일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간 직업훈련시스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독일 훈련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합니다. 여성, 신중년 등의 인력 활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는 교통 요지에 거점형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맞벌이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집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하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앞에 놓여진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올해도 입법, 예산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고용노동부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 동향입니다.

지난해 17년도 고용률은 66.6% 수준, 취업자 평균 32만 명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고용여건은 개선되었습니다만 올해 1월, 2월 들어서 기저효과, 그다음에 제조업 회복세의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취업자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 지난해 고용여건을 보면 실업률 9.8%로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향후 3~4년간은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청년 일자리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취업 증가세 회복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등 청년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에 역량을 쏟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7년도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반적인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사업장 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조금 감소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건설·조선업의 사망자가 많고 특히 사망자의 대다수는 하청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그다음에 엘시티 추락 사고 등의 경우에도 인명사고의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노동부로서는 주요 노동현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 지속 및 노동계와의 협의채널 유지,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재 문제의 경우에는 원청, 발주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산재 감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2018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혜대상 확대, 그다음에 금융지원 혜택 등 각종 홍보사업 등을 통해서 3월 19일 현재 노동자 132만 명이 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236만 명 기준으로 할 때 약 56% 정도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제 날짜로 현행화하기 위해서 자료 유인이 조금 늦어진 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하신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EITC 등 효과적인

정책조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안착과 관련해서는 경비, 청소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감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서 업종별로 자율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저희들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시간 노동 개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23페이지 현안보고드릴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나 지도·감독 등의 방안과 함께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을 통해서 장시간 노동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6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아, 돌봄, 학업 등에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외에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활용할 경우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 1월 23일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해 예방에 대해서 책임을 강구토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고사망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시기·유형별로 특성화된 감독을 실시하고 특별감독이나 수시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고가 많았던 타워크레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체 작업 중에 원청 안전관리책임을 명확화한다든지 전담신호수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방조치나 사후조치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장 밀집지역에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 확대해 주신 것에 따라서 영세사업장,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과 특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MSDS의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명칭, 함유량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출퇴근 재해 보상과 관련해서 3월 현재로 1257건 신청으로 756건 보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재해경위 등을 확인받도록 하는 날인제도 폐지토록 하고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확대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심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감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전략적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체계를 예방감독, 그다음에 위반징후가 있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감독, 그다음에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특정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이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의 선정,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의 노사 참여,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서 근로감독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정지시 중심에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직류의 선발을 추진하고 채용된 근로감독관들의 배치 전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감독관들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한 행동강령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동권 신장을 위한 관행·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갑질 등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 바가 있고 이번에 미투 운동 등에 대응해서 보완 대책을 여가부와 함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매년 1회 예방교육 실시하고 미실시할 경우에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 포함토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은 이번에 여가부와 함께 발표된 보완 대책입니다.

신고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고용평등상담실을 활성화하고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과태료 조항 등 성희롱 부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부 조항은 형사처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업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4월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노력을 저희들이 이어서 전국 지방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꾸준히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반적으로 첫째, 공공 부문이 선도하기 위해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조기에 완료토록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2·3단계, 즉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전환 기준을 마련해서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의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계 표준모델과 표준인사관리규정을 현장에 적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채용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비교대상 노동자 문제라든지 차별시정 신청권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하청 노동자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지난해에 이어서 파견·도급 업체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감독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동기본권 신장과 관련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련되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교과 내용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별, 업종별 대화를 활성화하고 미조직 노동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 부분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 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역별 고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대책은 25페이지의 주요 현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구직단계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돼 있는 부분을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도 업종을 확대하고 3명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 채용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형 또 기존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 제도도 신설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일본, 동남아시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와 관련해서 일단 1단계로 저희들이 70%로 인가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 향상 훈련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제부금 일액을 인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불량한 시설의 경우에는 외국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자 지원을 올해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용서비스 분야입니다.

고용센터 혁신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가 그동안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알선을 중점에 두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고 직업상담원의 처우 개선 등 직업상담원을 핵심인력으로 육성·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민간 위탁기관들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장기고용할 수 있는 위탁비 지급 체계나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 확대와 관련해서 2000만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에 특고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로사 인정 기준을 개선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향후 일자리 변동성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비진학 청소년이나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도 인력 양성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폴리텍에 관련 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공급기관이 콘텐츠 설계해서 온라인에 탑재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일자리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모든 조항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AA 확대를 위해서 적용 대상 기업에 공기업, 지방공기업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난임치료 휴가를 18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문제,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각각 상

임위원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도 인상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올해 중에 3개소 시범 운영하고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적합직무를 선정해서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생애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 그다음에 직종별로 사무관리직이나 기술기능직 구직자들에 대한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TF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만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업에서 호소하는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 그 외에 노동생산성 향상 내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점점 그다음에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은 규모별로 시행 시기와 연계해서 사업장 감독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칙이나 부대의견으로 주신 민간의 공휴일 적용 실태에 관한 조사 그다음에 남아 있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활용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고용부 내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25페이지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리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세제,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첫째, 기업에는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0인 미만 기업은 1인 고용 시부터 그다음에 100인 미만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형 제도 그다음에 기존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기주도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 부분과 26페이지 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한국지엠 등 구조조정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해서 고용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지난 3월 6일 자로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지원방안을 우선 마련해서 지난 3월 8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지엠 그리고 중견 조선사에 대해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군산시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서 향후 현지 실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정부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7분 주세요.

○위원장 **홍영표** 7분요?

○이용득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할까요?

○신창현 **위원** 5분씩 해야 오전에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송옥주 **위원** 5분으로 하시지요.

○신창현 **위원** 그리고 오후에 또 하시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오후에 7분으로……

○위원장 **홍영표** 아니, 지금 7분씩 하셔도……

○신창현 **위원** 오전에 다 끝나나요?

○위원장 **홍영표** 예, 오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씩 하시지요. 하시고……

○서형수 **위원** 5분만 합시다.

○위원장 **홍영표** 5분만요?

그러면 원래 합의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합의한 바가 없는데요.

○한정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합의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영표** 하시고 또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어차피 1분, 1분 할 것 아니에요?

○강병원 **위원** 그러지 말지요.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이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입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 나오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고용정책실장 임서정입니다.

○이용득 **위원** 지금 전북 군산의 한국지엠 또 현대조선소 폐쇄하고 경남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등 해당 지역들의 실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고 또 상경 시위까지 하고 성동조선 같은 경우 대책 마련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이 과정에서 3월 8일 정부가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제적 지원대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조조정 지역의 실업 위험에 대비하고자 취업패 등 재취업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6월 발표해서 시행 중인 조선업 고용 지원대책과 동일한 것이고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 조선업 고용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취업패 및 계좌제 훈련으로 대표되는 재취업 사업의 효과입니다.

지금 조선업종 고용보험 상실자가 저기 표에서 보듯이 총 6만 2000명인데, 재취업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대답 주시기 전에 시간관계상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불과 3%밖에 안 되고 재취업을 한 사람은 1.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재취업 지원사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이게 무슨 선제적 지원대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조선업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만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용득 위원 그러면 3% 참여에 1.3% 재취업이 목표였습니까? 얼마가 목표였는데 목표에 못……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위원님, 그런데 취업패……

○이용득 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두 번째 부분은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입니다.

지금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라는 게 납부 유예이지 징수 유예가 아닙니다. 즉 노동자에게서는 징수하고 납부는 유예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 노동자로부터 징수는 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깎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지금 결국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된다고 그래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 연금보험료요.

○이용득 위원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를 시켜 가지고 결국 사용자는 공금 유용이라는 범법자가 되고 노동자는 지금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정부 때 만든 조선업 지원대책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대로 판박이로, 복사판으로…… 선제적 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하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4개소를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3만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해서 1만 4000명 정도는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취업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모수로 했을 경우에는 취업률이 떨어지지만 취업패를 마무리하고 취업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77.7%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피보험 상실자에 비해 가지고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지만 그런 점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3월 8일 날 발표한 대책은……

○이용득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대책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과 관련된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그쪽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유예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복지부에 개선을 계속 요청했습니다마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건뿐만 아니고 조선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득 위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제가 복지부에 얘기해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 게 답변입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용득 위원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게 답변입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복지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을 수용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용득 위원 수용하지 못해서 노동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의 요청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현장성 있는 대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에 대해서 정말 노동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회보험료에 관련된 것 중에서 국민연금은 특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공제된 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횡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 법을 정부입법으로 하든지 국회 입법으로 하든지 법으로 이

미 노동자들이 납부한 돈에 대해서만큼은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국민연금이라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용득 위원 장관께서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 누적 체납액이 2조 900억 정도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용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지금 이용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조선산업도 그렇고 자동차—군산이 대표적인데요—구조조정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정부가 그런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 이런 지적이시니까 하여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장관님! 대통령께서 획기적인 일자리대책 내놓으라고 해서 고심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것은 법칙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고용이 많이 되는 나라들은. 대표적인 게 미국, 중국이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좋을 때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자율적으로 해고해 줄 수 있게,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규제가 더 강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보다는 공무원시험 보는 젊은이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경기가 좋을 때도 고용을 확대 못 하는 이유가 경기가 나쁠 때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도 확대를 못하고 해외에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간 7대 기업 조사를 하니 국내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10% 정도인데 해외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70%가 넘더라, 지금 다 바깥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대책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또 세금을 써 가지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사람과 대기업 취업하는 사람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그것도 3년이지요? 3년 이후에는 대책도 없고—대책이 있을 수가 없지요, 계속 세금을 부을 수가 없으니까—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정책도 올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지요, 내년에 취업하는 젊은이는 3년간 혜택을 받지요. 내후년에 취업하는 젊은이는 2년간 혜택을 받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직까지 구체적인 3년 2년 1년은 없고 현재 3년으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이번 추경은 지금부터 3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3년…… 그러면 다 3년 줘야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앞으로 다 3년 주고 그 이후는 정부가 바뀌니까 모르겠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정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의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토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분청·하청 간의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구조를 바꿔 가면서 중소기업이 건강해지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게 이렇게 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저도 사실 심정은 이해 갑니다. ‘국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데 그렇게라도 더 갈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제 우려는 첫 번째는,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해봤습니다, 한 30~40명.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경영진이 그 지원을 어떻게 많이 받을까 일단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특히 워낙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부작용은 언론에 보니까 ‘형님 차별’이더라고요. 형님 차별 정책이다,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도 신규 직원이 더 많이 받는다, 심지어 10년차가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경영진은 원래 국가정책이 나오

면 이것을 어떻게 많이 해먹을까 대책이 나오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존 직원을 줄이고 신규 직원을 확대해야 기업 인건비용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채용비리를 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꼼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커지겠지요. ‘왜, 내가 일찍 태어난 것이 죄냐? 1년 늦게 태어났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러면 임금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겠지요. 그러면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정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부작용,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먼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청년들에 대한 창업활동 그리고 여러 부분들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했을 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현장에 있는 250명의 대학생들, 청년들 해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2월 달까지 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거기서 느낀 것이 창업에 지원을 해 줘라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 고용유연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 그런 것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河泰慶 위원** 저는 규제완화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청년들께서 가장 얘기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중소기업이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우선은 처음에 세금을 투입을 해서 청년들 하는 것은 저희는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은. 그래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우선 정부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결국은 세제혜택을 줘 가면서 기업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같이 장구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차에 중소기업 입사하는 사람하고 5년차, 10년차의 임금격차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장기근속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은 다 원청에 있는 회사들의 하청을 받는 데가 많고 또 정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면……

○**河泰慶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추가 지원대책이 나오면 추경 4조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추경이 뛰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 방에…… 저희가 발표만 했고 우리 고용노동부에 한해 돼 있는 것은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장관님, 아무튼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답변 더 해 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지금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고용노동부 관련된 현안이 많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후속조치라든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일자리대책, 그다음에 지원 관련해서, 우리 조선·중공업 관련해서 구조조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께서는 이리저리 현장도 많이 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역대 30명 장관 중에서 여성 장관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월 22일 날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여성차별협약 권고라든가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가 있는 사무관이 대응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해서, 우리 국

제회의에 나갈 때는 국격을 드높이고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유엔 웹TV에 나온 겁니다.

(10시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이게 국제회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매뉴얼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답변하는 내용 보셨지요? 장관님, 지금 뭘 느끼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이 장면을 지금 처음 봤는데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국제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관행에 모든 국제회의는 국제국에서 가는 것이 관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이번에 제가 독일 갈 때도 훈련국장하고 훈련국 담당을 데려갔고 또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역대 우리 회의에 참석한 부분을 보게 되면 국제노동정책 사무관 한 분하고 그다음에 여성고용팀 사무관이 같이 갑니다, 담당자가.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고용팀 사무관이 안 갔어요. 그렇지요? 국제노동정책팀 사무관만 갔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비용이 없어서 그랬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여성국에서 현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비를…… 아까 말씀대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이자 위원** 또 하나, 우리 국회에서 사전에 국회 보고회가 있었어요. 국회에 보고할 때는 여가위에서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를 했어요. 했을 때 담당이 누가 나왔습니까? 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가지 않고 국제노동정책팀 사무관, 국제회의 담당하는 분만 가서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아주 저런 개망신당하고 온 겁니다.

가서 우리가 하는 만큼을 더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 여가

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저께 여가부도 위원회에서 아주 터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및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기소율이 낮은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대로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번 나와서,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질의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또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국제회의 가서 개망신당하고 오도록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고 여기에 대해 제가…… 담당 직원이 사전에 질의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임이자 위원 사전 리허설까지 다 했답니까. 리허설까지 다 했는데도 저랬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준비하는데 화면을 보니까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이런 행태도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와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제가 국제국장한테 이제 ILO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제회의는 그 담당 국에서 가라, 담당 실무자가 준비해서 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보고까지 다 하라고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리고 진상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번에 저는 우리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폴리텍도 같이 갔고 직업훈련도 같이 갔고 기술대학도 같이해서 그 기관이 갔다 와야 국제회의에 가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경위

파악까지 다 하고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저는 고민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띄움으로 해서, 물론 유엔의 웹TV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한 공무원의 인생이 달린 거라서 안 띄울까도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싶어서 담당 과장한테 우리 보좌관이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했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국제 담당 협력관이, 유엔 담당이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 장관님 혼자만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밑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장관님, 제가 한 가지 먼저…… 업무보고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처의 감독 강화나 매뉴얼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을 지금 제출을 해 냈고, 법률로써 뭔가 규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 부분을 하나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부터 진행돼 왔던 노동부 홍보계약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홍보계약을 맺을 때 소위 턴키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시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올해 진행됐던 홍보계약 입찰과정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이미 업체명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부 홍보계약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면 앞부

분의 계약총액은 27억에서 70억까지 그리고 건별로는 4억에서 8억까지 계약을 한 것으로 죽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면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여러 홍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그중에서 주요 6개 업체가 이 기간 67개 홍보계약 중에서 43건, 즉 64%의 홍보를 다 싹쓸이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더 높아집니다. 전체 382억 중에 약 300억 원, 즉 77.9%, 78%에 달하는 금액을 이 6개 업체가 다 싹쓸이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8년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다 계약을 해 간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 체결을 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미 위원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6개 업체 중에 굿미디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부터…… 제가 아까 통계 낸 것은 2010년부터인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건의 수주를 통해서 105억 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얻어 냈습니다. 이것은 전체 8년 기간 동안에 거의 30%에 달하는, 그러니까 382억 중에 30%에 달하는 거액을 굿미디어가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별 평균 계약금액도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13억 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 계약을 해 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블랭크 처리를 했지만 여기에 동국대, 청주대 그리고 중앙대, 서원대 그리고 교보생명의 각각의 다섯 분 등이 굿미디어뿐만 아니라 주요 업체들의 심사위원회 단골 위원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홍보계약에 참여한 업체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풀 명단을 가지고 있고 건별 심사를 할 때 그 풀 인원 중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시지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선정기준 없이 그동안 선정위원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단골 심사위원으로 계속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배제기준이 무엇이고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규칙들이 다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지난 시기 동안 이게 전혀 없었다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시면, 굿미디어가 선정될 때마다 반복해서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겨 주세요.

한국PR학회 주요 이사진입니다. 한국PR학회라고 하는 학회 명단을 죽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홍보계약 업체의 대표진들, 그리고 아까 단골 심사위원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던 교수진들,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산학협력업체 직원인, 사무관이요, 노동부 사무관의 명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보업체와 그다음에 심사위원과 노동부 직원이 한국PR학회의 하나의 멤버로 다 구성이 되어서 누가 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홍보 관련된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 심사위원 맡아 주고 계약업체 따 오고 노동부는 그 안에서 중개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드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 직원의 경우에는 학회 이사로 참여할 경우에 겸직 허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겸직 허용 신청을 했는지 확인을 미리 드렸는데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확인해 보니까 겸직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란법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당 사유가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검찰 고발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턴키 홍보계약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이제까지 진행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면밀한 내부감사 결과와 그리고 이후 검찰 고발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19대 때 마지막에 한정에 위원님께서 이 업체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년에, 올해 예산에서부터는 턴키방식 하지 말고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모든 국이 공유를 하고, 이번에 청년 홍보 시급성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야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홍보를 턴키방식으로 못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발견이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고발 및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살펴보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는 제가 1월부터 했던 그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안의 내부에서 감사..... 내부에서 해야 될,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나 내부감사를 하면 민간기업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 있던 일에 이런 게 발생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중단시켜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장 홍영표** 이런 문제는요,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한 6개월 넘었습

니다, 7개월.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업체와 밀착된 게 거의 명백한데 이런 일들 밑에서 그냥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게요,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면 ‘이제 알았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감 때 한정에 간사님께서.....

○**위원장 홍영표** 작년 국감이 아니고요, 수도 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제가 제 얘기를 잠깐만 설명드릴.....

○**위원장 홍영표** 불 꺼진 국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에 간사님께서 19대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적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라 이런 말씀을 국감 끝나고 얘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했던 직원들 핸드폰까지 다 수거를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1월에 턴키방식이 안 된다고 국장, 실장, 과장들 회의에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이 안 서는 부분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검찰 고발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 가는 과정에, 작년 국감 끝나고부터 진행됐던 문제인데 또 발생을 해서 이것은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한 번 외부 심사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심사하지 않는 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외부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두 번 들어오지 않도록 심사위원 이 부분도 전면 다 쇠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게 홍보비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 고용노동부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조사 과정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우선 앞에 이정미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미투 때문에 온 사회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간단하게 내놓은 것을 보면, 미투운동은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게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 문제, 권력관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미투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펜스를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시의 불이익이라든가 직장에서 여성들과 일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도 사실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자료 정리를……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3월 19일 자료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3월 9일 자료 정리를 했는데. 3월 19일 자료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이 아까 보고하시면서 42만 개였고 신청한 근로자는 132만 명 또 신청률은 55.9%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급률을 보면 3월 9일 자 기준으로 해서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집행에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낮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어제 날짜로 50%가 넘게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정했던 퍼센티지로 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구요.

원래 2월 중순부터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김삼화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급률이 너무 낮다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지급률 말씀드

리는 겁니다.

1월 급여가 2월 말에 끝났습니다. 1월 말 급여가 완료돼야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현장에서 신청이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3월 초, 5일까지……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사실 어쩌다가 TV를 켜면 장관님이 너무 많이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2월 달에, 처음에……

○김삼화 위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2월 말로 끝냈습니다.

○김삼화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세무사 사무실에까지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편물이 갈 정도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이렇게 나서서 민간 세무사 사무실에까지 요청을 할 정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50% 넘었다고 내놓으신 것 같긴 한데 호응이 생각보다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 우리나라 사업장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95%가 넘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다 열악한 사업장이고요. 일자리안정자금을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게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혜택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김삼화 위원 이따가 부족한 부분은 이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2015년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수

록 결국에는 고용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7.1% 인상됐을 때 감소는 6만 명 정도였지만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 증대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5만 5000명에서 약간은 상쇄됐지만 10%를 넘어가면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앞으로 정부가, 장관님도 작년 9월 국감 업무 보고할 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정책과 관련해서 골목상권의 잘못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2020년에 16.4% 가려면 2년 동안 계속 같은 비율로 올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고용 감소는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감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 노동소득 분배 개선 이런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부작용 없이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한쪽에서는 빈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직하는 이런 고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일부 언론이나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2000년도에 16.6%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때도 이것보다 더 고용률이 떨어지고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시장이 안정이 됐고 단기적으로는 취업 증가세가 둔

화됐는데 2분기부터는 회복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경기가 좀 좋아서 6% 성장률이 있어서 1/4분기에 했지만, 조금 둔화는 늦게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인 미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 정부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도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해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도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무조건 1만 원까지 가는 것을 정부가 2020년까지 이렇게 정해 놓지 않고 올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 둔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 국회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이런 문제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면접에 펜스 문제, 저희가 어제 즉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이 되고 채용에서의 차별 문제도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바로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속히 제정돼서 시행되는 데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그런 부분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이 너무 관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가 됐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정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마 지난 정부 10년 동안에, MB 정부나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 청년실업대책을 스물한 번이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업에게 창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시다만 MB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 프렌들리가 모토이지 않았습니까? 두 정부가 기업에게 규제를 혁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두 정부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MB 정부 같은 경우도 300만 개 일자리 약속했는데 125만 개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도 고용률 70%를 목표로 했지만, 해외취업 등 수많은 아이디어를 짜서 했지요. 그래도 66%밖에 안 됐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KDI나 국회예산처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정부 재정 투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IMF 이후에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말로는 9.8% 정도 통계지만 실제로는 20%가 넘는 것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절망을 떠나서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는 절박감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강병원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몇몇 지적들은 저는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만들고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되는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저임금 때문에 못 가는 건데요. 물론 산재, 복지의 문제, 장시간 노동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중소기업의 저임금 때문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장관님께서서는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한민국이 산업화시대 되면서부터 계속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해 갖고 일시적으로 경제 회복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나라 재정이, 경제가 건강하려면 중소기업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라든가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 인건비를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방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몇 재벌대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전 국민이 모두가 희생해서 재벌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들 같은 경우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9조 매출에 53조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이 큰 세계적인 대기업이 22%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4차 협력업체들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과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관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법인세 문제,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부가 기재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이 같이,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에서 나설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하기 위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이 진작 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정을 투입해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보내서 실업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대기업들이 기술도 탈취하고 납품단가도 인하시키고 쥐어짜면서 본인들의 영업이익은 최대화하면서 협력업체들은 다 빈사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 고심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들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끝으로 장관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하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우선 대기업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경유착부터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에 의존해서 GDP나 올리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행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까지 전부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더 이상 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 제가 여기서 깊은 얘기를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강병원 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지금 우리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부분, 비정규직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해야 될 일까지 비정규직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해야 될 일, 우리 고용노동부의 예를 들면 위험한 현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규직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그 비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 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감독한다고 그러면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남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이 하는 것까지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지만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최소화한다고 그러면 이게 민간부문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율의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정책을 통괄하는 장관으로서 지금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산하기관의 장들이나 간부들도 장관님이랑 똑같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금년 들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10개 기관을 다 다녔고 감사를 다 맡겼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감사를 해서 폐단을 지금 받아 내고 있고, 국회에서 우려하거나 그동안의 관행 같은 것을 없애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 고용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그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통계라든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칼날 위에 선 시선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까 청년실업도 얘기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25세부터 29세 사이의 인구가 매년 한 15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한 4년 동안에 70만 명이 줄었는데 이것이 14년 15년 16년은 그대로 가다가 17년 작년부터는 거꾸로 9만 5000명이 늘고 금년에 11만 명이 늘고 내년에 8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5년간 39만 명이 늘거든요. 4년 동안에 70만 줄었던 25세부터 29세 사이의 인구가 앞으로 5년 동안에 40만, 이런 전체적인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고용부에서 노동시장의 격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라든지 흐름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예로 지난 2월 고용동향을 보겠습니다.

2월 고용동향이 나오니까 온 신문에서 다 걱정을 합니다. '취업자 증가폭 8년 만에 최저', 10만 4000명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설기사까지 하면 '결국 고용절벽, 헛짚은 일자리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자 126만이라는 숫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계 수치를 조금 정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2월하고 금년 2월을 대비한 겁니다. 실업자 수는 작년 2월에 약 134만인데 금년은 약 126만 명, 오히려 약 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률, 작년 4.9%에서 4.6%로 줄었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3%에서 9.8%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따로 하시더라도 일단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세에서 29세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11.4%에서 8.2%로 줄었습니다. 더더구나 10만 4000명, 총 취업자 는 것 중에서 원래 고용동향을 분류해 보면 임금근로자는 작년에 15만 5000인데 금년에 16만 7000으로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상용근로자는 43만 명이 늘고요,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데 작년에 20만 9000명 늘었던 수치가 금년에는 6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 27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영업자가 4만 2000명 줄고 무급가족종사자가 2만 1000명으로 줄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라 자영업자 비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OECD 평균이 한 12%인데 우리가 지금 25%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고용률을 보더라도 15세에서 29세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청년의 고용 상황이 이 통계로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이 좀 낮아지는데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줄고 이것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15세 이상 인구 늘고 경제활동인구 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자영업자에서 줄었던 수치 정도가 결국은 다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는 이런 추세가 오거든요.

지금 고용부에서는 10만 4000이라는 취업자 증가폭을 모든 언론에서 문제 삼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이틀 전에 얘기를 해도 해당 과에서도 이 원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칼날 위에 서서 일자리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먼저 오늘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정책 정말 많이 쓰시고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한 직장 그런 데에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3일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서형수 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도 여기에 대한 실무 부서나 부처의 관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도 제가 다 읽어 보고 통계청하고 국세청의 여러 가지를 자꾸 비교해서 정확한 고용동향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

를 할 수 있고 야당에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하고 언론에다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 자문단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드리고.

2월에 이렇게 충격적인 게 나왔던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일자리 많아졌고 청년도 많아졌는데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역대 최대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월에 구정이 있었는데 2월 달 짧은 달에 구정이 있어서 일하는 날짜도 5일 이상 줄어든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아까 말씀드린 안의 내부적인 그런 준비를 못 해서 고용노동부가 대응을 못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 의원으로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3월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거창한 내용이 나올까 실은 내심 기대했었는데 결과를 까 보고 나니 ‘특단의 대책’이지만 특단의 대책은 없고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대책보다는 그냥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공감에 더 많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가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2년형에서 3년형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청년 3대 패키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추경까

지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지만 집행률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만 해도 55.4%에 불과하고 추경을 편성했지만 본예산도 쓰지 못했어요. 일반회계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더욱 보이지요? 작년에 이어서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본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도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정책수단으로서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2년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성숙도도 그렇고 청년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집행률 면에서도 그렇고 아직 성숙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할 것인지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지 기업 주도 만족할 만한 정책인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저는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선 가입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기업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실은 구조상 보면 기업은 더 부담할 게 없어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행정비용도 다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입이 저조한 원인 분석은 되어 있는지, 우선 그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관님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추경이 됐고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8월, 9월에 정부가 홍보를 하기 시작해서 11월, 12월 실적이 전체 실적의 4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12월, 지금 1월 오면서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신청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그런데 집행률 부진하고 가입률도 저조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작년에는 사실 1년 동안 미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들에 대한 3대 대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부

분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은 1월 달부터 5월, 6월까지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모든 부분이 후반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월에 국회에서 추경을 해 줘 가지고 고용노동부로 넘어오면서 실시된 것은 10월, 11월, 12월 이때 봤는데 그때에 50%를 소진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적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목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간단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되리라고 생각하셔서 높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편성해 놓고 본예산까지도 집행이 안 된 구조는 실은 잘못된 구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도 사실상 추경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6개월도 안 된 제도를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청년실업대책에 추경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청년실업을 3월 달에 발표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부터 정말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산신령이 와도 못 한다’ 할 정도로 선진국도 굉장히 어렵고, 위원님도 여당이실 때 청년위원장을 해 보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와도 굉장히 힘들고 힘을 합해서 해 나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은 전문가 그리고 교수, 정부에서만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250명을 청년일자리 관련해 갖고 저희가 규모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대책 발표한 것 중에서는, 아마 보시면 알지만 추경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청년들, 저희가 이번에 17군데 청년센터를 만듭니다, 지방에도 만들고.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정부 정책을 알 수 있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신보라 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래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보면 원인 분석은 참 잘하셨어요. 사무직·생산직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산업 창출 지체로 민간 일자리 수요가 위축되고 산업 성숙화 등으로 대기업 신규 채용이 위축됐고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개선의 과제예요. 그런데 실은 지금 청년일자리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단기적 처방에 거의 집중이 됐고 이런 구조개선 과제는 거의 외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 경직성 문제는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규제개혁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강성 노조하고 싸워서 노동법을 개혁하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실업률을 완전히 낮추고 있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장관님도 청년일자리대책을 논의할 때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성 노조와는 싸우기 싫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개선은 너무 장기적이니까, 체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외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게 강성 노조의 시장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마크롱 대통령께서 이 노동조합의 정책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통계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프랑스를 가보니까 우리는 정부 정책에서 청년실업이 10%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거기 프랑스는 정부 정책의 발표에 청년실업이 20%가 넘습니다. 제가 노동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신보라 위원 최근 일이 년 사이에 1%가 떨어졌어요, 청년실업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그런데 현재 20%가 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제가 프랑스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보라 위원** 굉장히 높은 것을 이제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강성 노조를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청년실업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앞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장기근속에 지원하는 것이 단기 고용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장기고용을 유도해 줘야,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오래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신보라 위원** 그런데 2년과 3년 안에 끝나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지금 2년, 3년에……

○**신보라 위원** 이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또 안 내놓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저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악의 고용 재난 상황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정책이지만 이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업주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유도해 가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관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신 위원님, 오후에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한정애** 저희가 가능하면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장관님께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 보면 ‘3조 원’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작년 추

경으로 통과돼서 일자리 안정,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 이게 3조 원이고, 그리고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서 토털 한 19조 원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9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예산도 재작년의 2조 6000에서 무려 3조 1000으로 3조를 경총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청년일자리대책으로 해서 추경으로 3조 이상, 사실상 4조 가까운 돈이 투입될 것으로, 물론 야당에서 동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도 이렇게 큰 단위를 보니까 이제는 단위에 좀 무감각해지는 기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업 문제가 절박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도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예산 저것도 부족하다, 추경으로 또 다른 3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일자리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고용노동부 자체가 쓰고 있듯이 미스매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스매치 해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일자리 문제를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까 말이지요. 2018년 청년일자리 예산 3조도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등등등 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서로 미스매치 해소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만, 실업 문제의 전제를 볼 것 같으면 산업구조 변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겠지요.

우리 지엠 군산 문제 또 대우해양조선과 같이 조선 문제 등등도 말하자면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 가지고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얼마만큼 재취업시켜서 실업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과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교육훈련이 돼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준비가 덜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산업구조 개혁이랄까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것은 정부의 다른 부처, 산업자원·중소·과학기술 분야 부처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가 하는 그러한 데와 더불어서 근로자들, 말하자

면 청년뿐 아니라 조선이나 자동차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엄청난 많은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중점을 뒀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위의 '3·3·3'에서 '1'만 떼서 차세대 산업인력 양성 같은 데 3조 원 정도 투입할 정도를 해야 당장은 모르지만 이삼 년 후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양질의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보기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정책에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고 청와대, 정부 자체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고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폴리텍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금년에 우리 폴리텍 교수 102명이 정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규 채용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술, 교수를 모셔 오고 싶어서 지금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독일에 갔더니 독일의 훈련기관에서, 보훔대학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냐면 훈련을 100으로 놓으면 50%는 기존 노동자들이, 독일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올 때도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서 도태되지 않도록 끌어와서 신기술을 가르쳐서 실업자가 없게 만들었고요, 그 50%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폴리텍 이사장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에서, 우리가 지금의 폴리텍은 기술 신규시장에 대한 학사과정이라든가 훈련과정만 있지 기존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서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게 절실하다, 이번에 가서 그 대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예산을 제출할 때 내년도의 그런 훈련 예산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막연하게 개선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집중 예산, 산업 그리고 학과 개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에,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상돈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청년일자리 문제로 고심이 좀 많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난 15일 날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낡은 대책이다.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에 청년실업대책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주무부처로만 했는데 제일 먼저 기재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중소기업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군복무에 대해서 국방부, 모든 부처가 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했을 때 '실행에 옮긴다고 그러면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청년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잘 챙기면 시장의 청년들이 동의하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조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청년일자리대책이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진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나 정부 측에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이번의 대책은 청년일자리대책TF를 마련해서 실제로 현장과 실생활에서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일자리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데요, 졸업과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만 원에서 6개월간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금액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직을 위한 상담이나 훈련비용도 필요하고요. 또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과 좀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임금의 인프라 확충 및 직장문화에 대한 개선대책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거비와 교통비 경감 대책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벨 실현을 위한 개선대책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 대책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서비스 제공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센터가 있는데, 고용센터가 지금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쉽지도 않고요. 또 관리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수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 마련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 들어갈 때 저희가 근로감독관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 달라고 해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2000명까지 늘리는데 올해 한 560명 채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고용센터의 상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100명을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이 부분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누차에 걸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 고용 문제가 재난 수준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짧게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드세요?

그러면 나오시는 동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패럴림픽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도 장애인들에게 꿈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장애인고용

공단 이사장 조종란입니다.

지금 2017년도 고용 현황은 데이터 검증 중에 있고요.

○**송옥주 위원** 16년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문은 2.96% 그리고 민간부문은 2.56%입니다.

○**송옥주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서 조금씩 낮은 상태네요, 미흡한 수준이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예.

○**송옥주 위원** 저희가 보니까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있는데 혹시 이곳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은 지금 1.75%고요, 그리고 수협은 1.76% 그리고 산림조합은 2.4%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고용률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많이 낮은 거지요.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현황인데요. 지난 4년 동안에 세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해서 부담금이 22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협동조합법을 만들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예.

○**송옥주 위원** 이사장님, 이 조합들이 낸 행정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장애인 고용의무는 고용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한테 사회연대책임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20년부터는 정부나 그리고 지자체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농협을 비롯한 기관들

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사회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점심시간이어서, 다른 분이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소송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아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지금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농협을 비롯한 기관들이 열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도 혹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아무리 본인들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아까 장애인공단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사회적 책무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관련 법의 허술한 부분을 짚고 들어와서 그런 소송을 냈다고 하면 그것까지 살펴봐서 정부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말에 우리 노동부가 3건의 보도자료 내셨는데 그중에 과로사 인정기준을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환영했는데요.

다음 보면 그 개정 내용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업무와의 발병 관련성 이것은 안 바꾸셨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 왜 안 바꾸셨는지……

다음,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인용했습니다

만 2008년에 노동부가 준 과로사 관련 연구에서도 52시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고시를 고치면서 52시간으로 안 하고 60시간으로 하셨는지 이게 궁금한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52시간으로 이것 다시 고칠 의향이 없으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음, 지난 3년간 과로사 현황입니다. 2017년 현황 보시면 유족급여 쪽에 과로사 205명, 노동부가 파악한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가 작년에 986명입니다. 10명 중 2명이 과로로 죽고 있거든요. 죽도록 일하다가 일하다 죽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과로사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된 과로사 인정기준에 따라서 이 통계를 보시면 맨 우측 하단에 최초 요양이 10명 중 한 8명에 가까운 2898명 그리고 과로사한 유족이 역시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1234명, 합하면 4132명이 3년 동안 인정을 못 받았습니니다. 그러면 개선된 고시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는 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식인 것 같은데,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런 권리가 있거든요, 해당 노동자나 유가족에게.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 팝업창 하나 정도는 띄울 만한데 없어요. 다음 보시면 지난 2월 8일 날 고객센터마당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4132명의 해당 불승인 판정 근로자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마당을 찾아와서 이것을 보고 과연 ‘다시 신청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조회수가 110명이예요. 4100명 중에 110명 정도 보고서 신청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기는 아예 이런 고시 개정에 관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과로사 판정 불승인 처분받은 유가족이나 해당 근로자가 이렇게 고시가 개정되었으니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4132명 많지 않습니다. 장관님, 개별 통지해서 이것을 안내할 용의 없으신가요?

이상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먼저 위원님께서 과로사 만성으로 인정기준을 왜 60시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 기준 마련하는 데 외

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한 8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들이 45시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45시간 미만은 없어서, 다른 나라 기준이 없어서 우선 60시간으로 말씀을,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성과로 기준도 저희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를 위해서 이 부분이 근로시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적극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창현 위원** 추가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연구 2008년에 하셨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60시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고 근로한 경우에만 과로로 인정하겠다는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고치면 간단한 일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법안 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리고 앞서 만성과로 인정기준 재판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개정 내용’ 하던 게 있던데 아까 보니까 홈페이지 정면에 있지 않고 고객센터마당에 있는데 팝업존에는 2월 13일 날에 올라갔다 지금 내린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e-현장노동청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부분인데 반드시 거기도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창현 위원** 132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4132명, 저희가 전부 이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금 3년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재청구하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직업훈련 중에서 공공직업훈련 관련한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재설계하는 부분은 아주 큰 국가적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검토해서 재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미스매치가 나이가 든 사람이건 또는 처음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이건 간에 부족함이 없이 적재적소에 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대책 최근에 발표하신 것은 2007년부터 제1차 저출산 종합계획이 실시된 이후에 2차까지 해서 10년 동안 퍼부었던 돈이 80조라고 했었습니다. 그 80조에 대한 분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나왔던 결과 중에 가장 문제시됐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나왔고 80조를 부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상보육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육아휴직을 더 길게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나 하면 일자리정책이 오히려 더 주요해야 하고 청년들이 최소한 첫 직장을 마련한 다음에 원하는 것은 5년 동안에 내 일자리가 안정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투입이 되기는 했는데 2조 얼마 정도, 80조 중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저출산 대책의 상당 부분은 일자리정책이어야 하고 그것도 처음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되어야지만이 그 청년들이 안정된 일 자리를 통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이를 가져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입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이 제3차 저출산 계획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잘 카운트하지 못했던, 제대로 미세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 얼마나 연장근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급여가 최저임금 백

몇십% 정도 되는 190만 원, 210만 원 이것이 아니라 실지로는 연장근로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본인이 받는 한 달의 급여가 200만 원을 훨씬 넘는데,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연장근로가 얼마나 현장에서 만연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라도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더 많이 받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법적인 노동 시간 내에서 받아 가는 금액이 그 해당 금액 이내라고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1분 47초밖에 안 남아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사실은 좀 뿌듯했습니다. 그간 지난 몇 년 동안 봐 왔던 업무보고 자료의 대부분은 ‘단협을 어떻게 뜯어고치겠다’, ‘노조를 잡아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었던 데 반해서 이번 업무보고 계획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촘촘하게 많이 채우시기도 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고 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 공무원들 힘드시겠지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감독관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 힘들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대민을 접촉하는 가운데서 대국민 서비스를 저하하거나 대국민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가운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와 언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아니, 첫 번째 것부터 보실까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현황 보면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습지만 대체적으로 다 행정 종결됩니다. 그중에 과태료 처분한 것도 아주 극소수고요, 기소되거나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집무규정입니다. 여기도 집무규정도 바꾸겠다, 오히려 더 사법 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성희롱 예방교육 제대로 안 하면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놓으셨지만 실제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2차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가서 제 팔에다 옷을 이렇게 들라고 그래 가지고 펜으로 오선지를 그려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감독관은 그것 그냥 습관이다, 친밀감의 표시다, 그리고 때리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폭력이 아니라 그냥 친밀감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서울서부지청에서 있었고 지난해 근로감독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당신이 문제 제기를 해서 내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당했고 노동부 내에서도 그랬다. 그러니 이 건이 스무스하게 처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서울입니다. ‘나라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STX 성희롱 관련 안전인데요. 지금 이 발언은 근로감독관이 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전남지노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노위 위원장

이 합의를 중용합니다. ‘내가 도저히 합의를 할 게 아니니까 합의 못 하겠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복직해 봐야 두 번 세 번 해고할 것 뻔하다. 그러니까 그냥 보상 좀 적당하게 받고 그냥 나가라’라고,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노위 위원장은 해당 기업과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제보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지키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우리가 아무리 미투와 관련한 것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차적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관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화풀이를 국민에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노동부가 먼저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더 강화하고 사법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국민 봉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 전담에 여성 근로감독관을 배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진상 조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저희가 모든 지청이나 지방노동청의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5분?

○**河泰慶 위원** 7분 하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5분 하고 필요하시면 2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장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불충분한 게 있어서요. 그 답변이 안 됐습니다.

청년일자리대책, 임금 역전 형님 차별 정책이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이 한 640만 원 정도 적게 받는다, 그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우리가 신규 채용뿐이 아니라 기존의 경력자도 지원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느냐고요. 아니면 다음에 하시겠는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게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신규취업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언론에 공표가 돼 있어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신규취업자와 기존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직자도 연간 7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연간 700요? 정부에서 700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연간 700에서 소득세 감면은 45만 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700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소득세 감면은 45만 원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교통비를 1인 10만 원씩 지원해서 120만 원을 해 드리고요. 자산형성이 현재 54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지원이 540만 원 해서……

○**河泰慶 위원** 자산형성이 연 540?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략.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게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자 대상으로 하

는……

○河泰慶 위원 그러면 전부 연 240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일단 3년간 540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河泰慶 위원 3년간 540, 1년에 540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노동자가 540을……

○河泰慶 위원 1년에 180 정도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1년에 540……

○河泰慶 위원 뭐가 맞아요? 1년에 180이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3년이 맞고요.

○河泰慶 위원 3년에 540, 그러면 1년에 180.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합친 것 345, 제가 암산 끝났어요. 계속하세요. 또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지금 여기 답변 써 드린 게 연간 700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연간 700은 잘못돼 있고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연간 얼마야? 연간 토털 얼마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45만 원이고 120만 원, 180, 34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하면요.

○河泰慶 위원 그래, 그렇게 합쳐서 해 보니까 640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네요, 지금. 언론에 났는데, 640 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포함해서 640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640 격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실 거예요, 추가 대책을?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거기에다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2000만 원……

○河泰慶 위원 그건 사용자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그건 원래 사용자 돈 주는 것이고 빼고, 지금 정부 대책은 이것까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새로운 게 없구먼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지금 현재 사실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河泰慶 위원 아니, 어쨌든 언론에 기존에 발표된 것 말고 오늘 새로 나온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아무튼 추가 대책이 있으면 준비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다음에는 채용비리, 저는 문제

인 대통령 최근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호하게 채용비리는 일자리 도둑질이다, 일자리 도둑질한 사람들은 다 해직시키고 억울하게 도둑당한 사람들은 다 복직시키고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용노동부가 큰 도둑질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그게 직업상담사 시험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원래 채용비리 중에 전형적인 사례가 공모기준을 직전에 바꿔서 준비 못 한 사람이 잘리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22점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시험계획을 정말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1점만 차이 나도 떨어지는데 22점 가산점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산점 못 받게 되고 이러면 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형 채용비리다 하신 건데, 장관님께서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대책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먼저 제가 위원님께서 시험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시험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요, 4월 7일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제도를 지금 새로 도입한 게 아니라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중단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적용을 안 하고 있었고요.

○河泰慶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적용하기로 3개월 전에 발표를 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담직렬로 100명을, 상담직을 뽑는 거기에 100명을 뽑기 때문에 그 직렬로 뽑는 부분을……

○河泰慶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9급을 635명 뽑는데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중에 상담직은 100명만 뽑습니다.

○河泰慶 위원 9급이 635명 맞지요? 지금 장관님 답변이 그중에 상담직만 100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상담직이 100명입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원래 이해하기로는 635명이 응시하는 9급 수험생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635명 수험생들 모두 다 가산점이 22점 추가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장관님 답변은 635명 중에 100명만 직업상담사 특수직으로 뽑고, 이 시험을 보는 100명만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이 답변이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00명을 뽑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河泰慶 위원** 명확히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河泰慶 위원** 몇 달 동안 시간을 드렸고, 사실 그동안 장관님한테 저희들이 전혀 추궁을 안 했습니다, 대책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맞습니다. 제가 우리 고용노동부……

○**河泰慶 위원** 그러면 잠깐만, 635명 중에 100명, 직업상담사 100명만 가산점이 적용되고 나머지 535명 지원하는 사람들은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적용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옆에, 조금 전에도 장관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이것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몇 달 동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명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상담직뿐만 아니라 일반 고용노동 직렬 전부 다, 그러니까 630명 전부 다 포함됩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1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1분을 더 주셔야 돼요.

○**서형수 위원** 나중에 하셔도 되지.

○**河泰慶 위원** 1분만, 지금 답변이 거의 끝났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밑의 직원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드러나신 것이고, 저도 635명 전원에게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의했고 오늘……

왜 장관님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 합니까, 밑의 직원분들은? 장관님은 직업상담사만 100명 뽑고 여기에만 가산점 22점이 적용되고 나머지 535명은 가산점이 적용 안 된다, 이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장관님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왜 장관님 지시를 이행 안 합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노동부가 이번 9급 공무원 시험 잘못 치르면 문제인 정부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부처가 됩니다. 공정성이 이 정부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시험 공정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부처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영주 장관님께서 그런 오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영주 장관이 해법을 마련하시겠다고 오늘 해법을 마련하셨고 그중에 100명 직업상담사 특수직만 가산점을 적용하겠다고 하신 건데 지금 밑에서 다시 보고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론 내세요. 이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외통수예요.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사들한테, 상담 직류를 뽑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려고 한 것은 상담사로 들어오면 일반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의 상담사를 보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상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 공무원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이 100명의 상담사 직원들한테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랬지,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가산점을 받고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건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노동법을 전공하는 사람 따로 뽑듯이 상담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직 공무원 가점을 주는 제도로 해서 100명 티오로 7급 50명, 9급 50명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맞고요.

이게 아직 시험이 제도가 되지 않고 공시된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서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동안 상담직에 있으면서 공무원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김영주 장관님 답변이 문제인 정부의 핵심 가치가 무너지는 걸 막았습니다. 박수드립니다. 노동부 직원들은 이행하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오늘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고용노동부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이자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게 더 좋으신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송구스럽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최근에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우리 사회에 지금 판도라상자가 열렸어요. 그동안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서 성폭력 등에 대한 여성 보호하는 정책

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미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용 내지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께서 오전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물론 실장이 했지만요.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계 개선’ 해 가지고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18년 4월부터요.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용이, 윈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서 직상위자나 기관장까지 엄중 처벌하는 걸로 이미 시달이 내려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처벌만 하고 나면 끝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 하는 데, 저희가 성희롱 관련해서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담당자들한테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성희롱 이 부분에, 미투 관련된 교육을 다 저희는 상반기에 이미 한 번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여가부·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상담을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윈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성돼 있지 않아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지금 미투가 너무 정신없이 밀물처럼 오다 보니까 아직 대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언제 적 말을 하실 겁니까? 어저께 여가위에, 본 위원이 여가위도 상임위를 겸임하고 있는데 어저께 여가부장관도 맨날 ‘논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노력장관’ ‘논의장관’ ‘검토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손놓고 있을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남녀고용평등 업무전담하는 여성 근로자를 지방관서에 배치하는데 2018년에 47명을 우리가 계획을 해 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 보세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점검해서 집중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집중 실시하고 난 후에는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방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해자하고 같은 사업장에 놓지 않는 이 제도를요, 그래서 같은 내에서도 다른 파트에 취업시키는 부분까지 매뉴얼을 다 만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를 들면 사용주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외국인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렇지요? 어떻게 신고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에서 추방될까 봐 걱정돼요, 불이익 받을까 봐. 장관님, 이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희롱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폭력까지 그런 부분들이 발각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사업자 변경을 못 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지금 성범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취소와 함께……

○임이자 위원 할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작동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는 지금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성범죄가 관련된 데에는 쿼터에서 인원도 제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A사업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성희롱 당했으면 B사업장에 취업도 허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저도 2분 더……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임이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장관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폭력 예방 또는 지원 대책 이런 걸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데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님, 지금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많이 개선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다음에 폴리텍 이사장님 대기해 주세요.

지금 공교롭게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출신 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서 성폭력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노사발전재단에서 지난 국감 때 지적이 있고 나서 실태조사 때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4건의 사건이 있었지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저희들이 내부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징계 이상 파면·해임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앞으로도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폴리텍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여기도 성희롱 사건이 참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일반직들은 대부분 보면 건

책 받든 파면 받든 다 됐는데 교수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급여를 받고 있고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왜 그렇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제가 12월 20일 날 취임을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제가 인지를…… 1월 말 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사실은 연관돼 있는 학장이라든지 교수들을 전부 다 직위해제를 제가 일방적으로 먼저 했고요.

○**임이자 위원** 직위해제해도 급여는 나가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직위해제를 하면 급여의 3분의 1이 나갑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을, 교원들을 징계하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해서, 또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빨리 할 수 있어서 빨리 처리했고요. 지금 교수직렬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이 있어서 되는 것 순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끝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하는 것도 늦어지고 아주 그냥, 이런 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예, 그렇게 하겠고요. 여성단체연합 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미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사후 발생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함께 조사를 하고 있고, 조직 진단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보고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사장님 임기 동안에 성폭력 관련해서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시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P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고시된 게 지난해 이후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6개 업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동 현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줄어든 걸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 고용보험 상실자를 보면 도·소매업에서는 소폭 증가한 걸로 돼 있고 숙박·음식업에서는 좀 더 크게 증가한 걸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직자가 늘어났다고, 상실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퇴직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특히 숙박·음식업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5~29인 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자 감소폭이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상실자가 8282명, 5~29인까지는 9176명이 고용보험 상실자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퇴직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30~299인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300인 이상을 보면 상실자는 5066명이 감소를 한 것이니까 퇴직이 아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자가 오히려 2만 395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신규 채용이 덜됐다고 보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년 대비 비교를 하면 신규 채용이 300인 이상에서도 상당히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보면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가 됐다 하는 것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숙박·음식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율도 있을 것이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종사자를 따져 보면 실제로 고용 감소폭은 더 클 것인데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준다고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르는 추가 부담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인상된 인건비를 사업주가 다 떠안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현금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이런 간접 지원 방식 전환하는 추진 계획을 금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 부분이 가 있는지에 대해서, 7월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지만 지금 정부 내에서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에 발표한 조선업 고용 지원대책하고 차이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 실직자 중에서 취성패 참여자가 700명 정도 밖에 안 됐었고 그중에 취업자 248명 그렇게밖에 안 됐었지요.

아마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직자들 수요하고는 안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을 지적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엠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도 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 하라고 그러면 재취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조선, 자영업 이런 지역 관련된 경제도 다 죽고 그렇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런 상황인데 훈련받고 상담받고 재취업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하고 상담하고 취업 지원 이런 단기대책 가지고 군산의 지역경제가 꺾고 있는 고통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산업정책과 연관 지어서 새로운 지역발전 대책을 내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는 군산지역과 관련된 지역 노사정이 함께 일하면서 고통 분담하면서 극복해 나갈 그런 해결책이 지금 여기 있는 구조조정 대응 이외에는 없는지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산 지엠 관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엠 구조조정 관련해서 아무리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준비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먼저 조선 산업에 대한 훈련이나 재취업 못 했다는 질타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실적 예정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기존에 있는 그런 방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을 하는 것에 훈련비 부담을 해 주고 그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군산에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부분밖에.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군산 쪽에 서해안벨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지엠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부분은 기재부하고 관계부처하고 지금 TF를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차관께서 단장으로 해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국회에 약속한 7월 달까지는 이것을 보고드릴 수 있는 만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께서 단장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차관님,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 말씀 주시면 김삼화 위원님 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일단 이게 비단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차관하고 저하고 공동위원장으로 관련되는 부처들이 전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 2018년 예산 결정 과정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EITC 등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저희 나

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들이 양쪽에서 다 각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하는 형태로 보완을 할 것이고요. 원래 약속했던 대로 7월 전에는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연구용역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기는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침에 보고했던 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업무 추진계획 아까 보고하셨던 25쪽 중간에 보면 청년일자리대책 주요 내용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 원, 노동부)+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5년간 3000만 원, 중기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서형수 위원** 그런데 왜 이 설명 제대로 안 합니까? 지금 이게 중기부 예산으로 해서 5년간 기존재직자에 대해서 내일채움공제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서형수 위원**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실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재직자하고 신규취업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제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서형수 위원** 모르는 것을 왜 여기 보고서에 올려놨어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노동부 전체에서 중기부 예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취업자 3년형을 하게 되면 기존재직자에 대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서형수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지원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이 1, 사업주가 2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존재직자 대상으로 5년형을 정부가 청년과 함께 1로 해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서형수 위원** 지원 신설한다고 표현, 신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기존재직자, 신설해서 5년간 3000만 원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주가 2, 정부가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5년간 3000만 원 중에서 중기부 예산 말고 기업 쪽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위의 3년간 3000만 원도 마찬가지로입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아닙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대비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노동부에서 나가는 3년간 3000만 원 100% 정부 예산입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청년이 일부 있습니다. 청년이 지금 현재 2년형 3000만 원을 붓고 있고요.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취업자하고 기존재직자 사이에 3년 3000만 원, 5년 3000만 원 같은 기준을 적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원 신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기존재직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든 기존이든 청년들이 붓는 돈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내일채움공제 중기부에서 하는 것은 사업주가 2,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1이 들어갑니다. 3000만 원 중에서 4분의 1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신설한다는 신설 내용만 얘기를 하세요, 신설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예,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중기부 지원 신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그 금액이 3000만 원 중에서 4분의 1입니다.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금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19조 2000만 원입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은 지금 안정자금 3조는 빠진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서형수 위원 그것 포함하면 22조가 되는 것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22조입니다.

○서형수 위원 청년 대책 3조 하면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25조 정도.

○서형수 위원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OECD 국가로 치면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지요. OECD가 지금 전체 GDP에서 보통 1.5% 정도 쓰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서형수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금액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특히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우리가 직접일자리사업이 너무 많고 실제 보면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에서 늘 얘기했지만 외

국의 경우에도 일단 일자리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 일자리사업 예산의 한 3% 정도를 따로 뺍니다. 떼서 그것을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다 주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강화할지 그렇게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자 그랬는데 지금 평가사업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평가사업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정보원의 일자리센터에서 하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서형수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산이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20억 중에서 재정 지원은 15억이고 5억은 보니까 다른 예산이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19조 2000억 중에서 실업급여나 일·가양립에서 한 7조 정도는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재정일자리사업을 잡으면 한 13조 정도만 잡더라도 3%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4000억 되지요? 외국 같으면 일자리사업 예산이 13조 같으면 4000억 정도 따로 뺍니다. 그래서 재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억대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결국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30% 정도는 저는 헛돈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는 최소 3%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시고 정말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만큼 정말 제대로 잡도록 하겠다, 우선 그러면 숫자부터 줄여야 됩니다. 작년엔 185개에서 183개 2개 줄였지요. 그다음에 대상 인원이 1000명이 안 되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우선 규모 통합하시고 제대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신청할 수 있는 기재부하고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최소한 1000억 이상 정도의 평가사업 예산 확보하십시오.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정부 일자리사업을 이어 가기 위해서 평가가 반드시……

○서형수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잠시, 임기가 언제까지 시지요?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다음 달 23일입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최저임금 인상률, 지금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산입범위를 변경했을 경우에 실제 근로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서형수 위원 매월 주는 상여금입니까, 아니면 전체 상여금 다 포괄하시는 겁니까?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를 월할 계산했을 경우에 약 75%는 전혀 영향이 없고 25%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 25%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하면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에 약 1%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수당, 복리후생수당을 포함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2016년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숫자는 비슷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상여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종 교통비나 약간의 식대 같은 것은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대신 40% 되는 저임금 근로자라도 어느 형태의 복지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는 사실 크지요. 그래서 40% 되는 분들이 만약 최저임금이 10% 정도 올랐을 경우에 복리수당이 이쪽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10% 중에 약 2%p는 그것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두 개를 합치면 3% 범위까지 되는 것입니까?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둘을 합치면 2.5~3% 정도 되겠습니다. 10%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산입범위 중에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상여금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포함시켜도 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복리후생비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비 식대 숙박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최저임금, 제일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 많은 항목들은 시차적으로 늦게 반영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반영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인상률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인상률은 그것은 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마는 그냥 사실로 보고요, 16.4% 됐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고용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 분석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학자로서는 상황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장기적으로는 2, 3년 지나야 좋은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부작용을 어떻게 다시 오프셋(offset)시킬 것이냐, 상쇄할 것인가는 정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몫이 지금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 임대료에 대한 상한제라든가 각종 지원 제도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상쇄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일부분은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지금도 많은 논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업종인데요. 업종은 자꾸 경영계가 차등 적용을 요구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셨다시피 음식점 숙박업 편의점 택시 이런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최저임금보다 좀 낮게 올려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차등 적용을 하지 말고 일괄 적용하되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는 지금 보편적으로 13만 원 주지 않습니까, 모든 근로자에게. 13만 원을 줄 게 아니고 그런 업종을 정해서 그런 업종에 있는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15만 원 17만 원을 주는 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수 위원 장관님, 아까 답변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월 말에는 3%에 불과했다가 최근 신청률이 한 달 반새 54.8%가 됐습니다. 급격하게 신청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장관님까지 발 벗고 뛰어 나선 홍보의 효과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아마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2일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혹시 그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확인을 안 하셨다고요? 설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일자리연대에서 나온 성명서요?

○신보라 위원 아니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할당제……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노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임금 협상이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성명은 봤어도 이런 추진 업무에 대해서 항의성 성명은 실은 처음 봐서 좀 놀랍기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성명서 내용이 ‘사업 추진의 조급성, 일자리안정자금의 조급성으로 보여 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기관별로 매일 접수 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서 조직 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 2월에는 30만 개 3월에는 50만 개 식으로 할당량이 내려왔다, 신청 실적은 물론 전화 상담을 한 실적까지 체크를 하고 기관별 실적

비교 자료를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달 실적이 한 자리 숫자였다가 지금 3월에 50%가 된 그 실적은 제가 1월 달부터 ‘실적은 3월에야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언론에다가도. 그 이유가 일자리안정자금이 1월 급여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급여는 거의 다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1월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12월 달, 전년치 급여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 없었고요. 2월에 2월 15일부터 1월 달 급여를 조금씩 지급하기 시작해서 2월 말이 돼야 1월 달 급여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간 거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보라 위원 신청을 한 것과 집행은 다를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집행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보라 위원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신청률은 높는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비율은 적잖아요. 그 차이는, 다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신청은 2월 25일 이후부터 급여를 줬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해 가지고 그 자격 여부라든가 고용보험 가입해 가지고 지급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먼저 지급했다고 혜택이 되고 나중에 아니라 12개월치만 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거기에 대한 신청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여 주기식 실적 위주였고 할당량까지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냐고 장관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해명을 하시기를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전혀 그 과정에서는 장관님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것도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16일의 언론 보도,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조들이 그 지원사업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항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해 김영주 장관이 다른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해 지방관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방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은 그동안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모든 인센티브가 전부 본부하고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서가 인원도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래서 앞으로 모두 끌고루 승진에, 그래서 이번 승진도 지방관서를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기를 돋우려고 하는 부분이지 지방관서는 이번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라든가 본부라든가 전국에 다 했지 일반 지방관서를 그런 의미에서 사기를 돋우려고 했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해서 부담을 줄이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불필요한 업무는 왜 그러느냐 하면 주 52시간이 근로시간인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밤 10시 넘어서 우리한테 하는 부분을 본부에서 가급적 소화를 해야지 그 부분을 지역에 내려보내서, 야간이나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최소한 줄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 모아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보라 위원** 문화일보 보도 잘못된 건가요?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적을 압박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일자리안정자금에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끝에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제가 질의가 또 하나 있어 가지고.

이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4대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 기간도 3월 31일에 끝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신보라 위원** 그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인데 그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3년치를 모두 내야 되는 구조라서 사실상 4월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신청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과태료 면제 혜택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것은 연장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신보라 위원**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지금 보면 연장이 안 된다가 아니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이……

○**신보라 위원** 그런데 특별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시겠지만 법적 체계를 많이 혼드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진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연장을 검토하시겠다라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만큼은 그 해당되는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사업주라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대보험 가입을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두루누리사업도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끝나면 일자리안정자금도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일자리안정자금 30인 미만을 세팅을 할 때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30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150만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 150만 명이 신청을 안 한 현재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2개월을 지원하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해도 열두달을 주고 2월에 신청해도 4월에 신청해도 되니

까 급히 서두를 게 없다 하는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을 이참에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루누리 90%를 지원하면서 견인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에 정부가 어떤 할당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대전도 가고 울산도 가고 전국을 다녀 보니까. 막상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신고하면 세금 폭탄을 받는다, 내 과세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도 많았고 또 제가 가서 홍보를 하고 언론에, 지역 신문에 나오면 그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려고 했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세무서나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 세무서가 30인 미만의 사업주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 사업주라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것은 1월 2월에 홍보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고 매일매일 집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할당을 맡겼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다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정말 힘든 국민세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돌아가는 부분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 답변대로라면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거짓말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인천에 가서 격려한 적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받는 당사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기금을 처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처보다 일도 더 많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부에다 초과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것보다는 일이 많아진 건 사실

입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보다는 오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국제회의 그것 좀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빌려서 보니까 국제회의 같은 건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수석대표가 있고. 유관부서에서 대체로 사무관들을 파견을 하지요. 그러면 사무관들이 국제회의에 따라가는 목적은 대체 뭐겠습니까? 대체로 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본부에 가서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무관이 국제회의에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사무관이……

○**이상돈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도 아까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이상돈 위원** 그리고 보면 수석대표인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어떠한 질문이 나오니까 한 네 가지 메모를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것은 장관이고 수석대표면 본인이 알아서 그냥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제회의에서 보면 아까 화면 나왔지만 다 50대의 그 분야의 그러한 사람들, 아주 베테랑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한국의 수석대표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사무관한테 답을 시킵니까? 사무관이 답할 거라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젊은 사무관이? 국제회의 경험도 없고.

나는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의 문제이기보다는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한다고 그러시겠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무리가 아닐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다른 부처 장관 얘기하는 것은……

○**이상돈 위원**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답변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이번 회의 때 보니까 장관이 수석대표고 국장급이 2명, 과장급이 4명, 사무관 2명인데 매머드급 멤버들하고 가고 이걸 주무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국제회의나 발언은, 이게 명함 적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은 다 수석대표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발언 같은 것, 길게 써 간 것, 문어체 같은 것 읽으면요 외국의 대표들 다 너무 지루해서 쳐다봅니다. 항상 가급적이면 수석대표는 영어로 연설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해서 구어체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답변 줘서 보고하라고 그리고 하니까 사무관한테, 법무부, 고용부 준비도 안 된 사무관한테 발언권을, 그 발언을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에 좀 어긋나고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굉장히 문제 제기는 하셨지만 국제회의 관례를 볼 때 이번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7년 만에 열린 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어느 부처의 책임 여하를 떠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어떤 직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서 제가 아쉬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다 써 버려서……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추가 2분 더 드리니까요.

○**이상돈 위원** 추가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정애**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디젤엔진 매연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창고에서 지게차 운영할 때 전부 디젤을 씁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장치가 없으니까 디젤엔진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직업병 문제가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타이어공장이나 지게차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연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한 것도 지금 확인됐고요. 또 환경미화원도 환경차가 디젤이기 때문에, 가까이 일하기 때문에 폐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디젤 매연에 대해서 산업안전법상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대응이 늦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디젤 매연이 발암물질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정말 느낀 부분이, 독일정부가 지자체별로 디젤차 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줄 정도로 매연에 대한, 미세먼지가 독일에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디젤 매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저희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보면 2017년만 해도 17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디젤 매연의 노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디젤 매연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는 이 부분은 특히 실내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이런 걸 봐서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산업안전보건국장님, 혹시 추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재 예방보상국장 박영만입니다.

디젤 매연 같은 경우는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확인은 됐지만 측정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물질들은 벤젠이면 벤젠, 석면이면 석면 이렇게 단일물질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디젤 매연 같은 경우는 수십 가지 유해물질이 섞여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처럼. 그래서 그중에 어떤 물질을 측정을 해서 그 물질을 디젤의 대표적인 유해인자로 보고 그 물질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대환 국제협력관님, 이번에 회의 갈 때 따라 갔던 사무관이 답변이나 또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됐었습니까?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김대환**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사전준비모임이, 그러니까 2월 22일 날 심의가 있었고요. 21일 날 정부대표단 전체로 사전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준비를, 각 답변을 주무부처에서, 담당 부처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주무부처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했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답변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김대환** 그러니까 저는 준비 회의 때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보냈습니까?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김대환** 가기 전에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각각 부처별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국장이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담당자가 이번에 1년 된 사무관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에야 알았는데. 그리고 사전 준비했던 오랫동안 국제부 업무에 근무했던 사람이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상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제업무에 대해서는 국제업무에 대한 총괄 부처가 그런 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른 부처 장관님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에서 가는 책임자가 적어도 그 여직원이 바뀌었으면 담당 전체 국장이나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요. 그런 부분은 국제회의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주무부처 장관이 준비를 하시되 우리도 준비를 해 가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저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LG유플러스 수탁사 불법과건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LG유플러스에서 유무선 통신망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들이 전국에 한 28개 업체에 33개 팀이 있는데요. 이들과 LG유플러스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성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넘길 테니까 봐 주시겠고요.

수탁사별 계획 인원 등을 보고받은 의혹입니다. LG유플러스는 수탁사별로 인원 및 차량 배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왔고 이를 관리해 왔고 또 각 수탁사는 인력 계획을 LG유플러스에 보고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수탁사의 망 유지·보수원들은 LG유플러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마당이라는 업무시스템 계정을 부여받아서 업무수행과 업무연락, 업무보고 등을 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신저 프로그램의 그룹채팅방을 통해서 수탁사 망 유지·보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수탁사 직원에게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탁사 직원들은 업무시스템을 이용해서 야간작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왔고요, 시설 보완 등 장비 교체도 원청에 요청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수탁사 직원들은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 작업을 원청에 보고해 왔고 일일 주요장애 현황도 보고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업무시스템 외에도 원청과 수탁사 직원이 함께 가입한 밴드방을 개설해서 그곳에서 수시로 업무지시를 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업무지시를 해 온 것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 11월에 포항에서 진도 5.5 지진이 발생한 날에 모바일 장애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자 원청 직원이 장애 발생에 관해서 외부에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하면 수탁사로 하여금 우수사원을 원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정된 우수사원

에 대해서는 개별 포상금을 책정해서 수탁사에 지급해 왔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사별 교육과정 및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각 수탁사의 일정 인원에 대해서 교육 참여를 요청해 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이게 수탁사의 위탁용역 계약용 손익계산서 일부인데요. LG유플러스는 수탁사에 대해서 매년 계획에 대한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계약용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했는데요. 계약금액은 차량유지비 등 자산 관련 비용, 인건비 등에 따라서 책정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의 비중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 한 60% 수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80%라는 부분들을 보면 계약 방식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이런 부분들을 열거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진성도급이 아니라 위장도급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 부분입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LG유플러스의 망 유지·보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통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업무로서 이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탁사를 통한 LG유플러스의 망 유지·보수 업무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면 이는 파견법 제5조 5항을 위반한 불법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LG유플러스 불법파견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저희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2월 9일하고 2월 27일하고요. 그래서 실태조사표를 지금 작성하고 조사 대상 협력사를 3월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참여 감독관 워크숍을 3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불법파견이라는 확증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우리 직원 얘기로는 LG유플러스 본사와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여기는 수탁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것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위장도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또 이런 제보가 있는데 각종 지시가 있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메신저 그룹에서 수탁사 직원들을 퇴장 조치하거나 위장도급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탁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나 산재 은폐,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위법 사례들도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이전에 먼저 실태조사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있는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해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되고 올 1월 달부터 일자리안정기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월 달에 보면 2.2%던데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129만 5000명, 54%여서 신장률이 엄청 높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3월 중순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1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급여가 2월 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들께서 2월 말부터 3월쯤에 하고 신청하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허수다 이 말이지요. 제가 축하드린 것이 진짜 축하가 아니고 장관님, 지금부터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29만 500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지금 근로자는 27만 명 남짓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장석춘 위원** 저는 이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인정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왜냐하면 신청 당시에는 바로 숫자가 입력되고요 그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급여 지급하는 데는 일주일에서 보름 간의 간극이 생깁니다.

○**장석춘 위원** 일주일 보름간 간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를 신청받고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장석춘 위원** 받는 기관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 온·오프라인 다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중복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 신청도 받고 지원 대상자도 아닌데 일단 하는 경향도 있는 것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 봤습니다. 3조 원의 예산을 쓰는데……

정부가 실적에 매몰돼 있어요, 현행 진행 상황을 보니까.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것은 신청하고 접수받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데 신청을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신청자는 129만 5000명인데 근로자 수는 27만 3000명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11%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자는 외면하는데 공급자가 안달해서 난리 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청와대, 부총리, 장관님부터 전 공무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이것 접수받으러 다닙니다. 읍·면·동에 할당 때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방에도 전화하고 나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할당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못 합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장석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못 한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달리는데,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문정부의 국민 사기극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포폴리즘정책의 아주 표본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또 4조 추경 한다고 그러지요. 오전에 신보라 위원이 아마 지적했나 보던데 불용액, 나중에 어떻게 데이터로 정리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분만 더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주들의 편의를 봐서 주민센터까지 전산을 했는데 문제는 전산망은 동일하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를 넣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받더라도 매뉴얼을 전부 만들어서 그분들의 고용보험관리사업장, 사업주번호 또 노동자들의 주민번호 이런 것을 쪽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연해보고 다시 하려면 ‘이미 가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뜨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이 또 이중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DB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국고보조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사업주 통장에다 직접 입금시키니까 신청하는 것하고 입금 지급하는 것에 차별이 있다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에 중복 집계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54%,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퍼센트가 조금 낮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지금 숫자 올리기에 급급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죽겠다고 합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

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밑에서 이런 부분을 할당했는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퍼센트가 낮더라도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54%는 허수입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도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는 한 80%, 90%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허위, 중복을 방지하시고 내실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정위원장님, 저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기구를 정상화하면서 제일 먼저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던 것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참여 주체의 확대와 관련한 부분,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몇 차례 노사정 내 합의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합의도 했었기 때문에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재편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생각보다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의 큰 전제가 참여 주체를 더 확대하는 것이 같이 전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지난 1월 31일 6자 대표자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노사가 재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본 토론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확대 재편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인들의 참여가 가장 기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인들을 참여시키자고 하니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리도 다 있다. 중간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고 또 비정규직을 하자고 그러니까 양대 노총에서도 ‘우리도 있다’ 이런 것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두 차례 토론하면서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는 탑클래스, 최고 의결기구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서브커미티(subcommittee)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논의해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들도 어쨌든 참여시켜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인 논의 방향은 최소한 국민들이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뭐가 새로워졌느냐’ 했을 때는 ‘아,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도 들어갔구나’ 하는 정도는 기본 아니겠는가 해서 탑클래스 의결기구에 이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끝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안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복잡한 사안을 논의해야 되는 논의의 주체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은 만큼 조기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의 확대 부분이 정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리고 중노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잠깐 전남지노위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노위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고소·고발했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당 지노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지노위가 합의를 중용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평가에 가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조차도 결국 조사관이 한 한 달 동안 판결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한 달 동안에도 계속 수차례 해당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해라, 합의해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해당자가 처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감안한다고 하면 2차적으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식 사안으로 들고 나왔을 때 2차 가해는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할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합의하겠지요. 그런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노위의 업무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다시 이런 일로 언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문 과정에서 신청인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가 있으셔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아 계신 분들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만 정회하면 어떠실까요?

○**장석춘 위원** 20분……

○**위원장대리 한정애** 20분?

○**임이자 위원** 아니, 뭘 20분까지 해?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장석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河泰慶 위원** 10분만 하고 해요. 빨리 가시는 것이 좋지.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면 지금이 3시 35분이어서 3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구갑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5분.

○**위원장대리 한정애** 3분 하셔도……

○**河泰慶 위원** 시간이 4시도 안 됐는데……

○**위원장대리 한정애** 5분 하니까 7분씩 되고……

3분 하시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미니멈 3분, 맥시멈 5분?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河泰慶 위원** 알았어요.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야당 간사로 계실 때 항상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야당 위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회의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위원장대리 한정애** 몇 명 아니라 다 앉아 계십니다.

○**임이자 위원** 5분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3분 하시고 부족하시면 시간을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으로 충분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3분 하면 흐름이 끊어지니까 3분 하실 분은 3분에서 끝내고 5분 하실 분은 5분 주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3분 하고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질의는 최근 한국지엠과 금호타이어를 보면서 노조가 파업을 왜 하느냐……

노사정위원장님, 파업은 회사 죽이려고 합니까, 회사 살리려고 합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당연히 살리려고 합니다.

○**河泰慶 위원** 살리려고 하지요? 노동자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임금이나 처우를 좀 더 받아서 회사를 더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예.

○**河泰慶 위원**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망하려

고 하는 회사에서 파업하자고 하면 그것은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잘 빨리 끝내기 위한 진정성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위원 의미심장한 전략이 숨어 있는 모양이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그런 과정을 통해서……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우가 GM한테 망하고 인수된 게 몇 년 전입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제가 금속연맹위원장 할 때니까 2000……

○河泰慶 위원 십몇 년 되었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문성현 예.

○河泰慶 위원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7조 가치 나가는 회사였는데 1조로 떨어졌어요, 부도나 가지고. 그래서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7조 가치를 제대로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노조 때문이에요. 구조조정해라, 산업은행에서 돈 줄테니까. 산업은행은 돈 대 주고 싶은 명분만 찾고 있는데 설마 30만이 실업자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느냐 해서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돈 못 주고 부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고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리해고된 거예요. 금호타이어하고 지엠도 똑같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호타이어 2018년 임단협 요구사항’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전에 민주노총이 ‘5.3% 임금인상을 요구해라’, 국민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이 아니라 ‘망국노총’이라고 그랬어요. 나라 망치는 노총이다.

지엠노조도 그래요. 답이 없어요.

복리후생비 주라, 또 임금인상 요구 안 하는 대신에 3000만 원 주식 달래요. 잘되는 회사에 달라고 해야지, 지금 망해 가는 회사인데……

10년간 정리해고하지 마라…… 다 정리해고됩니다, 저러다가. 대우랑 똑같이 돼요.

임원은 한국인으로 다 바꿔라, 65세까지 정년 연장해라……

노조위원장, 노총위원장 출신 김동만 이사장님 하고 또 한 분 이석행, 두 분 일어나 보세요.

누가 쓴소리 하겠습니까? 이제 쓴소리해도 되

잖아요, 현직에 안 있고. 나라 걱정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두 분 될 때 쓴소리하려고 그랬어요, 노총 하다가 전부 다 이렇게 오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굳이 아무 말도 안 한 이유는 노총 이제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파업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민노총이 한노총하고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 날 때까지는 파업 안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삽니다. 존경받는 노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 노동자, 노조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회사 이득 날 때까지는 파업하지 말자’, 김동만 위원장님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이석행 위원장님은 가만 계시는데 먼저 답변해 보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요구사항이 잘 타협이……

○河泰慶 위원 마이크 쓰셔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지금은 어쨌든 고용이 중요한 거니까, 고용 부분이 핫 이슈화되기 전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결부되면 잘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파업 선언 이끌어 내겠다……

답변해 보세요, 이석행 이사장님.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 이석행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운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벌써 5년 됐습니다. 여러 분들이 다 우려하셨지만 한국의 직업교육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수없이 해 왔던 사람이고 지금 폴리텍에서 저 나름대로는 모든 매체의 인터뷰 등등도 다 거부하면서 한국 직업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폴리텍의 직업교육에 대한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직업공무원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직업교육 전에 노조도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 사랑 별 겁니까?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하겠다. 파업 안 하겠다' 이 선언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교육 잘 시켜 주세요. 그게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많이 지치시지요?

차관님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가지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정책에 담아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내질러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빨리 다 쓰도록 닦달한다, 못 해 먹겠다, 강제할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개인의 임금인상 부분이 있는 거고 EITC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인 가구에서 한 사람만 벌여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4인 가족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인 가족에서 2인 다 최저임금 받는다 하더라도 중위소득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약계층을 도와주려고 했다면 EITC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들을 면밀히 연구 검토했어야 되는 게 옳다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게 불용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장관님뿐만 아니고 기재부차관, 국무총리 다 국민에게 죄짓는 겁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 지원정책의 근거는, 법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년고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 자리 어렵지요? 답변하려니까

쉽게쉽게 답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장관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고쳐서 34세까지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35세는 뭐예요? 34세까지 끊은 이유가 있나요?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34세와 35세 사이를 끊은 이유가 뭐지요? 법에는 29세까지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34세까지 끊어 놓은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15세에서 29세 또는 34세까지 되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임이자 위원 글썄,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한……

지금 예민해요. 왜냐하면 34세하고 35세의 1년 차이에 쪽 실업자로 있다가 취직하게 되면 34세까지는 1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35세 되면 못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준이 뭐냐는 얘기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잣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15세에서 24세 단위단위로 나누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아니, 29세까지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34세까지는

실태조사를 했더니 34세까지가 미취업자가 너무 많다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했다라면 이것 또한 실패한 정책이 될 게 뻔하고요.

봐, 3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 3분밖에 안 주어지니까 조금 이따가,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조금 이따 할게요. 제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오전에도 청년일자리대책에 관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년형으로 2017년 하반기 때 도입했는데 이번에 3년형을 새로 제안하셨어요. 3년형을 신설한 이유가 뭘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형으로……

○신보라 위원 차관님이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관님이 발언하시지요, 저는 장관님께 질의했지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3년형을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3년형을 신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기존재직자들과의 여러 가지 역할 차별 문제가 생겨서 기존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형태로 5년짜리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2년형으로는 두텁게 보호가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그러니까 2년보다는 3년이 보호가 더 두터운 게요 예를 들면 2년 같은 경우는 근로자 1인당 전체적으로 1600만

원까지만 되던 것들을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3년간으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지난 예산 대비 1.8배 증가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청규모도, 그러니까 신청자격요건도 아예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신보라 위원 그러면 신설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냥 본예산에서 수정 집행할 수 없나요,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2016년부터 쪽 집행해 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도에 대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성패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일·학습병행 등등만 되어 있던 대상들을 전체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다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대상이 대폭 늘었고요, 현재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청년 대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3년짜리로 만들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난해 집행률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 저는 우선 2년형으로도 충분히 본예산 집행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3년형의 경우는 기업 보조금이 1050만 원이에요. 이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105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업급여계정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보험기금의 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의 고갈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이라는 게 실업급여와 그다음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실업급여계정들은 모성보호 등등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태라서 의원님

들이 입법도 하셨던 것처럼 일반회계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용안정이나 능력개발 사업 쪽의 계정들은 법정 테두리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에 지원이 강화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기업이 청년을 지원하는 부분들, 즉 기업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기업이 청년에게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책정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계정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창출 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준으로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용안정·창출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그쪽에 있는 것은 15.3%를 증액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15.3%를 감액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조정을 계속 하는 방식이면 어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사업 내부에서 예를 들면 실업급여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안정 사업이나 직업훈련 사업 계정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조금씩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단 일반회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고용보험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장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6월 30일 되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이상돈 위원 그래서 과거에 산업인력공단이 했던 일을 다시 재하청이라고 그럴까요, 하다가 6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떤지 또 고용노동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격검정원 노조에서도 고용승계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인력공단에서는 당연히 티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공단에서 갖고 있는 수요를 가지고는 검정원에서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공단이 차질 없이 재위탁한 업무를, 인력공단 본연의 업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수시 정원을 확보하도록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가급적 불협화음이 없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고용노동부 산하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공단 현안도 많은데 자격검정원 일을 갖고 옴으로써 인해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관님, 지난번 저희가 보고받기로 자격검정원이 이번에 채용비리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기관의 하나에 속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자격검정원이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국감에서 지적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것도 있고 이번에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채용비리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채용비리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위원장대리 한정애** 기술자격검정원으로 기관을 빼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채용됐고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다시 인소싱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경북 구미시율의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추가질의 안 하니까 아예 5분 주십시오.

장관한테 질의할게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는 청년을 15세에서 34세로 보고 있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장석춘 위원** 고용부는 15세에서 29세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까 신보라 위원께서 질의해서 차관께서 답변하다 말았는데 말씀을 마무리를……

○**장석춘 위원** 짧게 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임이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는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었는데요. 원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청년고용할당제가 지금 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4세, 그러니까 30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들이 위헌을 제청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청년고용촉진법에는 35세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는 29세인데 국민들이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본질의 들어갈게요.

지난해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장석춘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업대란을 방지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위기가 온다 하면서 11조 원의 추경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만 6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 4000개의 간접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6만 4000명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접고용은 지금 파악도 못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총고용자 수는 작년 7월 달에 보면 661만 8000명이었는데 올 2월 달에는 641만 5000명이거든요. 추경 이후에 일자리가 20만 3000개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관리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일자리가 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추경도 투입하고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셨는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61만, 640만이……

○**장석춘 위원** 작년 7월 이후에 청년 취업자 수가 총 661만 8000명이었는데 올 2월 달에는 641만 5000명으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7개월간 보면 취업자 수가 20만 3000명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석춘 위원** 15세에서 34세 청년.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장석춘 위원** 왜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들습니까? 그만큼 추경도 하고 청년일자에 이 정부가 모든 사활을 걸다시피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간 다 가는데 빨리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정확하게……

○**장석춘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우리 방으로 보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장관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가 퍼주기식 일자리 이 정책이 졸속이라는 소리입니다. 졸속이라는 소리고요. 올해 또 4조 추가 편성을 하잖아요. 습관성 추경은 오히려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하는데 고용이 증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고용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고용이 늘어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장석춘 위원** 청년일자리상황판을 내리시고, 아무리 해도…… 고용은 기업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가는데, 정부가 공무원하고 공기업 세금 가지고 뽑으시고……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 내리시고 거기에다가 정치보고상황판 올리라고 제가 제안드리니까 국무회의 때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세요,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정상적인 경제구조이지 정부가 세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성이 상당히 많고요.

일자리 주무부처가 고용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고용부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장석춘 위원** 일자리위원회 보면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부위원장이……

왜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지 이유를 제가 보면 알겠어요. 거기에 하시던 분이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게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일자리 주무부처는 고용부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설득력 있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 고용률이 전체로 보면 많이 줄었지만, 오전에 서형수 위원님께서 거기에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월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을 보면 15세에서 64세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세분화를 해 보면.

왜 그러나 하면 그동안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와 가지고 고용시장에 들어온 청년들이 많아서 고용률은 올라갔는데 실업률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업률과 실업자 간 고용지표가 개선됐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방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그 부분은 금년 들어서 43만 3000명을 중심으로 임금 근로자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체 고용에서 2월 달 통계가 굉장히 낮아 있는 부분은 2월 달에 한시적인 노동자들, 한파로 인한 노동자들하고 작년에는 구정이 2월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구정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청년층이 금융이나 보험에 취업자가 예년에 비해서 4만 4000명은 늘었습니다. 고용률이 좀 올라갔는데요. 그러나 50대 이상, 한파, 건설업, 농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줄어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용정책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있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두 분이시네요.

임이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시지요.

○**임이자 위원** 장석춘 위원님께서 ‘일자리상황판을 차라리 내려 버려라’ 하는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일자리정책 그다음에 일자리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나선 현 정부가, 일자리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이요 일자리 정책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팽개쳐 놓고 지방선거에 가서 마음은 콩밭에서 뛰고 있으니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하던 김에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원책별로 보면 대상지역 규모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주거비, 그러니까 전세·월세 보증금 지원 관련돼 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어떤 규모의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년 대책 말씀하신 것인가요?

○임이자 위원 예.

시간 가요.

차관님 답변 안 하면 시간 줄여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령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에서 34세 청년 대상이고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중소기업입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지원책별로 각각 대상 규모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주거비, 교육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것의 대상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왜 50인 미만으로 잘라 가지고, 오히려 청년들이 일자리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100인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50인 미만 사업장일 때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청년들이 300인 미만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꾸 시간 가게 말씀 많이 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기업 규모별로 조금

더 애로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 애로들을 감안해서 기업 규모가 작고 열악할수록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대상을 좁혀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청년들이 50인 미만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이 일 자리에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00인 미만 이렇게 하는 게 청년들이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교통비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단지에 입주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면서요. 교통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월 10만 원……

○임이자 위원 120만 원 지원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꼭 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주는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저희가 산업단지로 한정을 했던 이유는 산업단지가 일단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산업단지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서 산업단지 근로자들로 제한을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기업 많아요.

현장 다녀보셨어요? 장관님, 현장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산업단지 아니라도 도심에서 떨어진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꼭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주로 50인 미만들이 산단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임이자 위원 아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단에 안 있더라도 좋은 데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석수공장 가려면 저기 산골짜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별화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5인 이상 중

소·중견기업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이 정부나 여당이 5인 미만에도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도록 하자고 맨날 부르짖으면서 5인 이하는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5인 이하도 자기들끼리 창업한다거나 누가 사장이 되고 또 그 밑에 자기네들이 근로자로서 채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이걸 탁 잘라 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 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5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성장유망직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차관님. 이렇게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특히 국민의 혈세, 세금 가지고 지원할 때는 매사에 꼼꼼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해서 해도 될동말동인데, 이것 자칫 잘못 하게 되면 일자리안정사업처럼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일부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또 보완해요? 일자리안정자금에서 19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210만 원 늘리듯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10만 원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예상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제상의 문제가 있어서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현재 문제인 정부가 이렇게 줄속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많아요. 일단 내질러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늘리고 줄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그 후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셨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정부 적립금 1800만원을 3년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상 기업을 지원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보조금과 행정 지원을 포함해 가지고 1050만 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것 그것은 팩트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고용보험에서 나가고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신보라 위원**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이 어쨌든 급속도로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실업급여계 정도 적립배율이 일점몇 %밖에 되지 않고, 물론 직업안정기금을 비롯한 이것은 일정 정도 적립배율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사안 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요,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요율 인상까지 염두에 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아마 금년도,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 혹시 추가적으로 요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을 보면 ‘3년여’ 이렇게 단기처방을 하면서 사실상 문제인 정부일 때 최대한 모든 세금을 다 쏟아붓고 그

이후 정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지적이 있는데, 고용보험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도 사실상 국회예산정책처나 이런 데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이면 현재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고갈 상태, 어쨌든 적자에 놓인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 지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도 올라가고, 여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것도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신보라 위원** 일정 정도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모든 것을 다 당겨쓰는 구조라면 이후 정부에는 사실상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구구조 자체가 이른바 에코붐 세대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온 세대다 보니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취지인 것이지 정부가 이번 정부에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자체에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단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직업훈련 쪽에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아까 말씀 주셨던 내일채움공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7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검토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한 800억 정도 이 정도 고용보험이 있고 능력개발 쪽 훈련사업에 한 30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보라 위원** 그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 사안이어서 정리가 되면 되는대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정말 어디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대대적으로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장관님도 16일에 있었던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그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일자리로 고용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일자리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장관님은 생각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는 그런 역할을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임명되어서 왔을 때 일자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있었고, 대통령께서 1호 공약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드신 이유가 일자리를 기존의 고용노동부만 갖고 하기에는 기재부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고 산업부에서 일자리를 또 같이 만들어야 되고 중소기업부에서 벤처나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그런 총괄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이 직접 하시겠다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주무부처하고 일자리정책을 기획하는 데 일자리위원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집행부처의 역할로 굉장히 전락했다고 보고, 그러면 일자리위원회가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보면 실제 출범 이후에 7, 8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용섭 부위원장 사퇴하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몇몇 기관장들도 다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청년위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성희롱 문제가 있으면서 사퇴를 하고, 그러면 일자리위원회는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긴 공백이 생겨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부위원장이 없으시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저희가 지난 15일 날 전체 청년일자리 발표한

게, 일자리위원회 4차 회의 겸 청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성 일자리 그리고 테마별로 지금 계속 나가면서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것도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 아침에 도깨비방망이로 일자리 만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장을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가 분담을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부처로만 있으면 대한민국 불행해 집니다. 고용노동부가 각 분야의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저도 일자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기재부에 요구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환노위에서 주시는 의견, 여기서 나오는 것 모두 받아서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저는 일자리위원회는 실은 옥상옥 기구다,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당연히 모든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챙겨야 될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도 그렇고 모든 고용관계법에도 그렇고 일자리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청년일자리대책이 이번에 나왔지만 이것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위원회가 옥상옥 기구로서 만들어졌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틀과 구조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이런 문제를 조금 등한시하면서 몇 개월을 또 지나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장관님이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일자리위원회 없애고 우리 주무부처가 역할을 더 하겠다, 그리고 관련한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야당 생활 9년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환노위를 계속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부부처에서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와서 보니까 차관도 한 명밖에 없고 다른 힘 있는 부처는 세 명 있는 데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 국 많이 늘려서 하려고 그러면 기재부나 행안부나 인사처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벽을 두들겨도 안 뚫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말 일자리 정부부처인 만큼 기구 개편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나중에 국회에서도 도와주세요.

일자리위원회 역할을 저희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임 위원님, 잠깐 쉬고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중에 10쪽에 보면 노동권 신장을 위한 관행·제도 개선의 가장 밑에 보면 성희롱 인식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앱을 전면적으로 폐기한 게,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00개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들 휴대폰을 쓰시지만 이 앱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다운을 잘 받지 않습니다.

성희롱 인식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희롱 관련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될까를 알기 위해서 다운받아서 이것을 해 볼까, 이게 뭐랄까요, 약간 탁상행정식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저 정도의 발언은 나도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 유지하다가 이것도 쓸모없는 앱이라고 또 폐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의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의 지적 받아들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에 맞는 성희롱,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 소관인데요. 계절근로자 사용하는 것, 한 3개월 정도씩 계절적 수요가 있을 때 외국인노동자를 쓰기가 쉽지 않으니깐 계절근로자를 쓰는데 제가 알기로 고용부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계절근로자의 사용 요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니까 법무부가 계속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약간 범정부, 부처에서 논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추가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고용정보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고용정보원장 이재흥입니다.

○**임이자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고용정보원 관련해서 국감 이후에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장님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깐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3급 이상 연구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별적 연구 수탁한 것이 2년간 1인당 2800만 원 정도 수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탁연구 횟수와 금액 상한, 직원 대외활동지침을 규정하도록 하라고,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 대외활동지침을 규정했나요? 만들었나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지금 개정 예고를 해서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래서 우리가 고용정보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년간 2800만 원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잡입니다, 투잡.

장관님 안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투잡 수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저기 멀리…… 여기 어디에 있지요? 진천에 있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진천 저기에 따로 떼어 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사원 감사를 멈추어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연구활동으로 회의, 토론, 간담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뒤편…… 그리고 전 직원 세금 조사까지 다 해 봐야 될 실정인데 감사원 감사를 중단해 달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부분은 일자리포털사업 유착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파면 등 조치를 했고요.

○**임이자 위원** 글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세금 조사까지 다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중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감사원에 의뢰된 것은 일자리포털사업 유착에 관한 건이고요.

○**임이자 위원** 글썄요, 물론 그런데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들어가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나오세요. 오셨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임이자 위원** 왜 불렀는지 아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왜 불렀어요? 제가 왜 불렀을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최근에 저희 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1000여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분명히 있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고 개진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또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모든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려면 또 예산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임이자 위원** 고용노동부는 늘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차관님,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에서도 이게 결렬되고 결과적으로는 권고안만 정부로 넘어갔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법률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논의를 한다고 홍영표 위원장님이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7월 15일 날 금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

미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그 말씀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도 일단 산입범위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인식인 것 같고요, 정부도 당연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차관님께 질의한 것은 제도개선 필요한데 그중에서 산입범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산입범위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 논의돼서 정부에 왔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입범위 중에 일단 정기상여금 부분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것이 다수안이고요. 전체 상여금들을 포함하자는 것이 소수안으로 왔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적 경비 부분들은 현행대로 가자는 1안과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경비를 포함하자는 2안……

○**임이자 위원** 차관님, 제가 차관님께 질의한 내용은 요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안이 다수안 있고 소수안 있고 다 있지요. 그러면 다수안, 소수안 그렇게 날 썰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 법률안이 안 올라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정부에서 정해야 됩니다.

○**임이자 위원** 정부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데 왜 자꾸 시간 가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래서 일단 다수안 중심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시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 조금 유연하게 정부 입장도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하고 협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다수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그다음에 숙식비는 아니고 정기상여금만

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것 다수안이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현금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2안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 논의 되는 과정들을 저희는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 겠다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현장을 너무 모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를테면 현장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상여금이 1200%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600% 정도 상여금이 지급 될 경우에 어느 회사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라 칩시다. 같은 회사지만 사업장이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자의 어떤 회전력을 가지고 어느 사업장은 50%씩 잘라서 1개월씩 12개월 동안 계속 주는 사업장이 있고 어느 사업장은 ‘우리는 그렇게 할 것 뭐 있냐. 그냥 2, 4, 6, 8, 12 이렇게 달라’라고 했을 때 이쪽은 산업범위에 들어가고 이쪽은 산업범위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임이자 위원** 그렇게 되면 노사 간에 또 엄청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통상임금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쳤을 때 정부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제도를 개편해 놓고 나면 그 바뀐 제도에 따라 일단 기업들도 맞추어서 적용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현장을 너무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9·9·9 그렇지 않습니까? 노 9, 사 9,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범위에 있어서 지금 고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이번에 고시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재는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임원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고시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최저임금 고시한 거요? 그 최저임금……

○**임이자 위원** 노사 대표자 범위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사용자단체는 4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리고 추천권을 갖는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은 좀 다르고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란 말입니다, 지금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추천권한이 없지만 단체의 임원이 추천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이 된다, 그래서 현재 추천권한을 가진 4개 사용자단체 중 2개만이 해당 단체 소속 임원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돼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견기업중앙회 등 각종 사용자단체에서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현재 고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경총이 3인, 중소기업중앙회가 3인, 대한상의회가 2인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1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에게 배려해서 지금 소상공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1명 돼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소상공인 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별안간 물어보시니까 확인을……

○**임이자 위원** 차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 위원** 소상공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300만 정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3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임이자 위원** 300만 명입니까? 자영업자 포함해 가지고는 7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7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임이자 위원** 그러면 노측은 어떤 대표자들이 들어갑니까? 한노, 민노,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것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한국노총 몇 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민주노총 4명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속에서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려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경총이나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도 물론 규모가 작은 데는 해당됩니다마는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 정도는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대표자보다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올해는 고시가 끝났습니다. 고시가 끝났고, 2019년도에 고시할 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음으로 장관님께서도 지난번에 유럽 갔다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뉴욕은 아니고 독일……

○**임이자 위원** 유럽도 독일이지요, 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뉴욕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발음이……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아침부터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임이자 위원** 유럽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장관님 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한데 중소기업 사업장 맞벌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확충하자라는 데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또 유럽, 그러니까 즉 독일, 프랑스 다녀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일단 올해 우리가 이 3개소를 시범설치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현재 167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3개를 합쳐서 167억 정도 밖에 안 된단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167억 가지고 어떻게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수가 있나요, 하나 짓는 데도 15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고가 70% 되고 지자체가 30% 미만인데요.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 수도권에 하나, 서울에 하나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우선 한번 새로 건물을 짓거나 크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올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인수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물론 민간위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67억이 국고 70%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고, 그다음에 하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내로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공단 아닙니까? 산업단지인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영세근로자들도 많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없거나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해서 없어도 될 곳에 거기 지자체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되면 그리 간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원래 기재부에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7 대 3이라고 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 이내로 해서 지금 현재 8 대 2 정도까지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원님이 지금 안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안산시에서 지원을 못 할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열어 놓고…… 그 지역에 저희는 우선 맞벌이, 저소득층 사각지대의 맞벌이들을 하기 위해서 산단에다가 우선, 산단이 많은 지역에 거점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권고 내지는 그것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3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할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데다가는 비용을 조금 덜 지원하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해서 거의 국고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참고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70만 도시인데요, 근로자가 19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만 해도 반이 노동자 도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는 노동자 도시에 이 부분을 꼭 유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 꿈 짝도 안 하고 있고 공무원이 자체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랑 같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을 좀 견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안산에 꼭 하나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사

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몇 페이지지요?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이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번에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발표를 한 것 보니까 52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하고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예산만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 19조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19조 2000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직접일자리 예산이 지금 3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52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 포함됐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직접일자리가 3조는……

포함돼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다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또 노인 일자리 52만 개를 쪼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도 지쳤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이자 위원 답변서를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힘드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계속할까요? 차관님, 계속해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정미·신보라·임이자·이용득·하태경·송옥주·장석춘·김삼화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사정위원장님 또 중앙노동위원장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병 원	김 삼 화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청가 위원(1인)

문 진 국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차 기	관 관 조	김 이 박 임 안 박 권 김 김 김 김 류 박 선 김 황 박 이 나 정 정 이 김 오 문 박 어 윤 송 김 박 조 이 김 이 오 홍	영 성 화 서 경 성 혁 덕 경 영 민 왕 경 영 우 대 보 준 원 영 형 지 태 영 복 성 준 현 문 준 현 문 동 두 종 재 석 기 정 광 경	주 기 진 정 덕 회 태 호 선 국 석 왕 회 만 택 환 국 효 두 우 원 회 미 수 현 성 봉 덕 현 우 만 용 란 흥 행 영 식 성 자
-------	-------	---	---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권영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사무총장 이주일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3. 14. 이명수·박인숙·박맹우·유의동·김성찬·金成泰·임이자·김명연·이정현·성일종 의원 발의)

3월 15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3. 15. 송옥주·박정·한정애·윤관석·강병원·박찬대·김정우·김병욱·전혜숙·이용득·유동수·신창현·이정미·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

3월 16일 회부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권미혁·남인순·김상희·정춘숙·최인호·송옥주·전혜숙·백혜련·유승희·윤소하·신창현·양승조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윤소하·송옥주·김상희·이용호·천정배·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최도자·손금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윤소하·송옥주·박찬대·김상희·이용호·천정배·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최도자·손금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8. 3. 15. 김경수·강병원·고용진·권미혁·권철승·기동민·김경협·김성수·김종민·김태년·김해영·김현권·민홍철·박홍근·변재일·서형수·소병훈·송옥주·신경민·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원욱·이훈·전재수·제윤경·조승래·한정애·홍익표 의원 발의)

3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